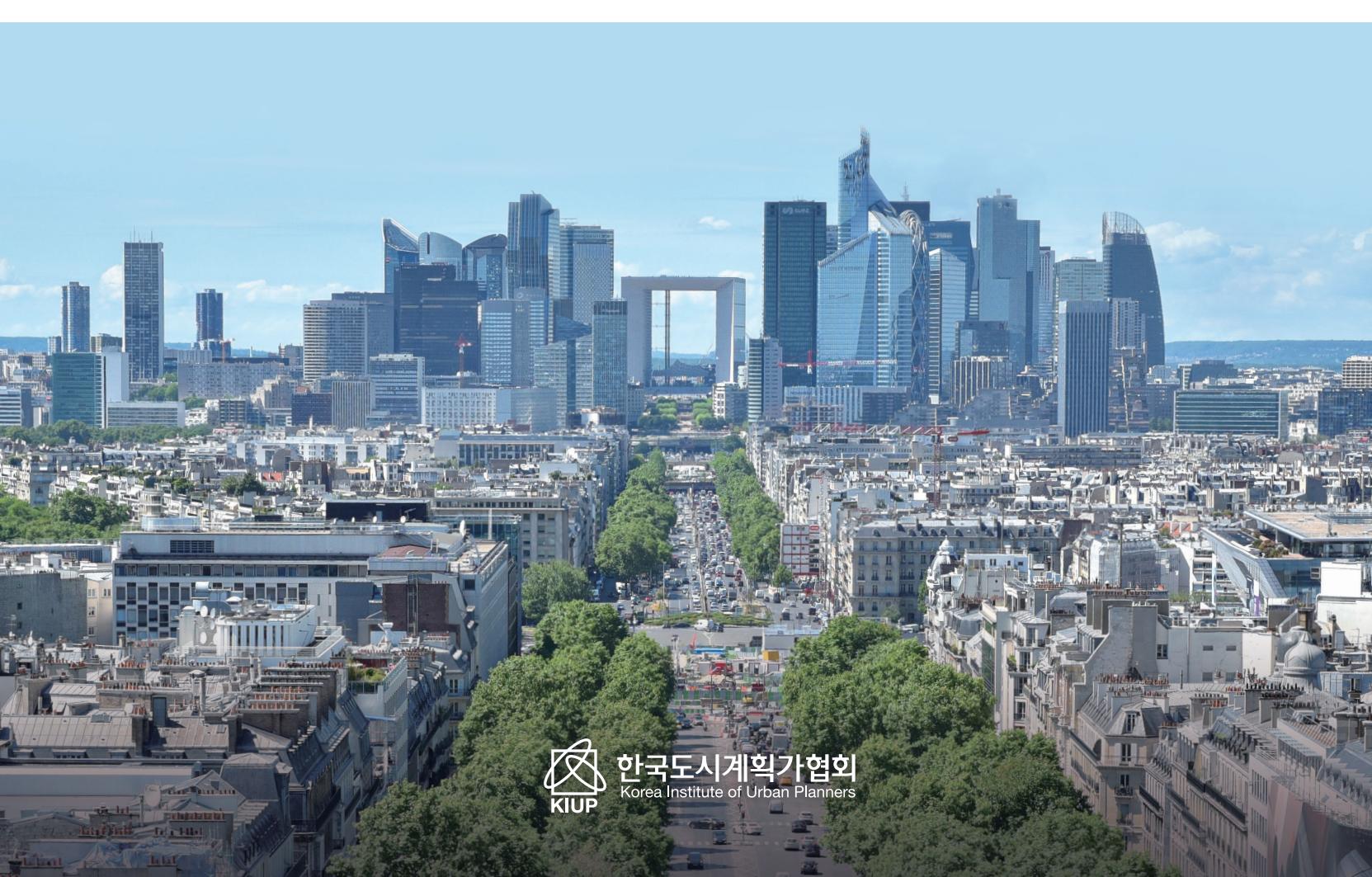


URBAN PLANNERS

도시와 안전

2024년 4월호
제11권 제2호(통권32호)



한국도시계획가협회
Korea Institute of Urban Planners

URBAN PLANNERS

2024년 4월호
제11권 제2호(통권32호)

편집위원회

위원장

서원석 _ 중앙대학교 교수

부편집위원장

강평희 _ 대한콘설타트 이사
박유진 _ 중앙대학교 교수

편집위원

강창덕 _ 중앙대학교 교수
권대한 _ 국토도시연구원 연구위원
권성문 _ 대구대학교 교수
김권일 _ 인토엔지니어링 이사
남형권 _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기덕 _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용진 _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양혜선 _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윤진희 _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현경 _ 동의대학교 교수
전법석 _ Texas Southern University 교수
전희정 _ 성균관대학교 교수
진장익 _ 중앙대학교 교수
진재특 _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홍현민 _ 다정엔지니어링 이사

편집위간사

이다은 _ 중앙대학교 박사수료

부편집간사

김찬혁 _ 중앙대학교 석사과정



사단법인 한국도시계획가협회

Urban Planners 제11권 제2호(통권32호)

인쇄 2024. 4

발행일 2024. 4

발행처 (사)한국도시계획가협회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6길36

오피스텔월드 704호

Tel. 02)2291-4333 www.kiup.org

발행인 이승일

편집인 서원석

표지디자인 정다운, 김학민

편집인쇄 디자인나무

앞표지 사진: 파리 개선문에서 La Defense를 본 경관

뒷표지 사진: 스페인 Sevilla의 Metropol Parasol

Copyright(C) 정다운

ISSN 2713-5039

Contents

03 고 여춘동 부회장 추모의 글

06 권두언

도시안전과 CEPTED
_ 강성진(경상대학교 교수)

08 Focus 도시와 안전

일상생활의 안전한 사고(思考)
_ 민경훈(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시 청년 여성 1인가구의 주거환경과 범죄안전
_ 김꽃송이(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범죄예방분야에서의 VR 활용방안
_ 허재석(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두려움 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
_ 임보영(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다문화 사회의 범죄 현황과 대응 방안
_ 강수진(중앙대학교 강사)

30 News &

도시분야 관련 법률 개정내용 및 해설
정책제도, 판례 및 유권해석

52 KIUP Members

협회 행사 소식·동정

19



52



고 여춘동 부회장 추모의 글



여춘동 부회장이 지난 3월 10일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럽게 맞이한 일이라 아쉬움과 슬픔을 제대로 표현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협회 동료 이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가르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학생 때에는 열심과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학생이었고, 전문가로는 실력 있는 도시 계획가였으며, 경영자로서는 탁월한 CEO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가 속한 사회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회에 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2019년 3월 한국도시계획가협회 4대 회장으로 취임할 때, 저는 그에게 산학 부회장으로 참여를 요청하였고, 그는 망설임 없이 제 요청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는 말로만이 아닌 협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도시계획가 위상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이라는 저평가된 이름을 ‘엔지니어링’으로 바꾸느라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인토장학금’을 마련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내 대학에 재학 중인 미래의 도시계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협회가 중요하게 추진하는 일에는 늘 여춘동 부회장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회고해 보니, 여춘동 부회장은 도시계획가에 대한 자부심이 큰 사람이었고,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에 대한 기억들이 많고, 그 기억들은 참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이제는 그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짐을 느낍니다, 슬픔을 뒤로하고 우리도 그의 열정을 본받아 아직 어려운 협회를 위해 그리고 도시계획가들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한국도시계획가협회 고문 김홍배

열정이 가득한 도시계획가 여춘동 대표는 늘 하고 싶은 것이 많은 분이었다. 도시계획업을 하면서 새로운 제도, 정책, 계획을 수립하는데 두려워하기보다는 늘 앞장서서 도시계획이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20년간 종합엔지니어링이 아닌 단일 도시계획엔지니어링으로서 꾸준히 업계에서 인정받으며 탄탄하게 회사를 이끌어온 진정한 리더이기도 하다. 회사에서는 늘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 쓰며, 필요한 것은 없는지, 불편하지 않은지 귀 기울이며 변화에 대응해왔다. 그리고 그 약속은 늘 지기는 분이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회사에 오래 다니는 이유는 대표님 덕분이라고 할 만큼 존경받는 분이다. 도시계획에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플랜테크 영역, 연구영역 등에 투자하며 변화를 시도하였다. 오랜 시간 도시계획만 해왔기에 이런 도전을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춘동 대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인토를 운영하면서 도시계획의 변화에 많은 족적을 남기고 간 여춘동 대표가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란다.

한국도시계획가협회 감사 / 인토 부대표 백복수

기어히 님은 떠났습니다. 님의 영원한 침묵이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아픔이지만, 그 세상에서도 여기처럼 주변에 온기를 불어 넣어주는 화신이 되어 주소서.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부회장 선권수

도시계획분야 후배 학생들을 위해 남들이 하지 못한 장학사업을 하셨습니다.
그 높은 뜻에 항상 존경을 드립니다.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부회장 최민성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여춘동 부회장님. 도시계획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언제나 활한 웃음과 따뜻함으로 선·후배들에게 사랑의 촛불을 전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부회장 임영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도시의 미래, 하고 싶은 일, 후배들을 위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동료중의 한 사람, 도시계획가 여춘동. 당신이 남긴 “사람과 땅의 조화로운 연결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人, 창의적인 人, 꿈을 꾸는 人, 이들이 만드는 다양한 가치 土”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부회장 김선아

여춘동 부회장님 늘 열정적인 모습과 진지한 눈빛이 그립습니다.

다부진 체구에 도시계획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격정의 카리스마가 생각납니다.

기업 경영과 대외 활동으로 둥분서주하는 고단한 일과에도 도시계획가는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사람과 공간 PAPER' 전문저널을 만들어 소통의 장을 여는 치열함을 존경합니다.

도시계획과 IT를 연계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열의에 찬 말씀도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이제는 한 공간에서 함께 하지 못하지만 부회장님께서 남기신 지대한 발자취는 저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밝은 별이 되어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소서.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부회장 윤정중

짧은 문자와 카톡의 눈부신 속도에 익숙해진 세상이지만 12월이면 우편으로 전해지는 주식회사 INTO의 연하장 속에는 한 해 동안의 감사와 새해 인사가 정성스레 담겨있었고, 그 아래로 여춘동의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있었다. 큰 체구에 잘 어울리는 말끔한 얼굴로 좋은 말을 가려 하면서도 잔잔한 미소가 가득했던 그는 그렇게 매년 따뜻한 연하장을 보내주었다. 협회에서 처음 만난 사이지만 그와 함께했던 일들이, 기억들이 적지 않다. 아직도 그의 떠나감이 실감 나지 않지만 그의 늘 싱그럽던 미소와 따뜻했던 목소리는 아주 오래도록 생각날 것 같다.

한국도시계획가협회 감사 한상훈

여춘동 부회장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정말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 뒤 이제는 좋 아지셔서 회복에 열심이시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터에 너무나 갑작스런 부고를 받고는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 분의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사진과 가족들을 보며 비로소 실감이 났고, 동시에 생전에 도시계획가로서 열심히 사셨던 그리고 도시계획가들을 위해 하신 많은 일들을 금방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는 것보다는 한국도시계획가협회의 위상이 그 분으로 인해 크게 격상하였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여춘동 부회장님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몇은 우리가 져야 할 것입니다. 여춘동 부회장님을 보내드리며 우리 협회의 더 큰 발전을 다짐해봅니다. 정말 많이 감사했습니다.

제6대 한국도시계획가협회 회장 이승일

도시안전과 CEPTEDE



강성진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계획학 박사

한국셉테드학회 연구부회장

2023년 여름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이상동기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는 범죄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범죄예방 및 대응 정책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범죄가 일회성으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기억을 되돌려보면 코로나-19 이전에도 초등학생 유괴 및 납치사건, 강남역 여대생 살인사건, 아파트단지 방화 및 살인사건, 여성 1인 가구 대상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는 꾸준히 발생하였고, 연일 언론을 통해 관련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변화되었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5대 범죄(폭력, 절도, 강도 등)가 감소하면서 범죄 안전에 대한 인식도 무뎌진 것 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해외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이하 셉테드)를 중요한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셉테드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도시학, 건축학,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학제적인 연구와 실증 사례를 통해 효과가 검증되면서 대표적인 현대 범

죄학 이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산업적으로 의미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셉테드가 중요한 범죄예방 이론이자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범죄가 환경이 제공하는 기회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Timothy D. Crowe(2000)는 '셉테드란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design)와 효과적인 사용(use)을 통해 범죄 불안감과 발생 범위를 줄이는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기법'이라고 정의했는데, 이는 공간의 특성과 이용자의 행태를 고려하여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은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활동은 적극 지원하는 환경 디자인을 통해서 개인의 범죄 대응 능력은 향상되고 지역의 이미지는 안전하게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2012년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의 '소금길'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유사한 셉테드 사업이 전국단위로 확산되었다. 이와 함께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건축법 53조의

2항(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신설(2014.5) 및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 고시(2015.4)와 자치단체의 셉테드 조례(자치단체에 따라 명칭이 조금씩 다름) 및 셉테드 기본계획(종합계획)이다. 이는 셉테드가 법 정계획으로 의무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셉테드학회, 경찰청,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주로 주거건축)의 셉테드 인증도 시행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과 다르게 빠르게 셉테드가 정착되고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범죄 불안감은 높은 수준이고 각종 강력 범죄의 위험이 상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우리나라 셉테드의 성과와 한계를 다음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단기간에 유사한 셉테드 사업의 확산에 따른 피로감 해소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내실있는 사업의 확산이 필요하다. 셉테드 사업의 양적인 증가는 안전 인프라 확산과 인식 개선에 기여했지만, 단순한 경관 개선이나 CCTV와 같은 방범시설 확충에만 치중된 사업은 기존 대책과 차별성이 없으며 범죄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셉테드의 본질은 지역별 도시건축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의 도출과 적용인 점을 고려하면, 적은 예산의 단편적인 사업보다 규모가 있는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각종 도시개발사업, 주거 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이 필요한 지역은 범죄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셉테드 개념을 적용한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유형별 범죄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례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실효성 있는 법제도 적용을 위한 실행계획과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셉테드를 위한 건축법과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실무자들의 인식은 미흡하고 각종 심의 및 인허가에서도 셉테드 적용의 확인(검증)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셉테드가 행정 편의와 예산의 한계 등으로 인해 도시 차원의 공공영역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민간이 소유한 사적영역의 건축물 셉테드 적용은 소홀한 것에도 기인한다. 노상범죄와 함께 침입범죄도 심각한 문제임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셉테드는 균형있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

한 관점에서 건축물의 셉테드 적용을 위한 교육 확산과 자료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행정에서는 셉테드 전담 조직(인력, 부서) 구성과 심의 및 인허가 규정을 마련하고, 도시기본계획이나 도 종합계획과 같이 중요한 정책계획의 성격을 갖는 셉테드 기본계획도 자치단체의 현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한 융합학문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과 산업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다양한 연구가 양산되고 석박사 학위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관련 전문가 부족이나 실용적인 연구성과의 부재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적 셉테드와 건축적 셉테드를 구분하고, 영역별 산업화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단계별 자격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예를 들어, 무장애 인증이나 친환경 인증과 같은 위상으로 셉테드 인증이 시행된다면, 셉테드에 특화된 엔지니어링, 설계, 컨설팅 업체가 나타나면서 관련 자격증 소유자의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영국의 SB-D(Secured By Design) 인증 및 일본의 CP(Crime Prevention) 인증과 같이 각종 설비 및 제품에 대한 시험과 디자인이 강조된다면 관련 분야 연구자(기관)의 업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만병통치약처럼 언급되는 셉테드는 일회용 홍보성 정책으로 소모되는 사례를 무수히 경험하였다. 셉테드는 결코 모든 범죄를 예방하는 대책이 될 수 없기에, 환경과 범죄 유형별 대응 전략을 도출하는 이론이자 실행계획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앞으로도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며, 예측과 대응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여전히 셉테드가 발전할 가능성은 있음을 전제로 지금까지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고,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스마트도시(smart city) 및 압축도시(compact city) 적용을 위한 셉테드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3세대 셉테드의 가치와 연계되는 것으로 한국형 셉테드의 단초(端初)가 될 수 있다. '안전'이 인간 욕구의 핵심 요소임을 고려하면 셉테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가치이며, 중요한 도시건축계획 개념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일상생활의 안전한 사고(思考)



민경훈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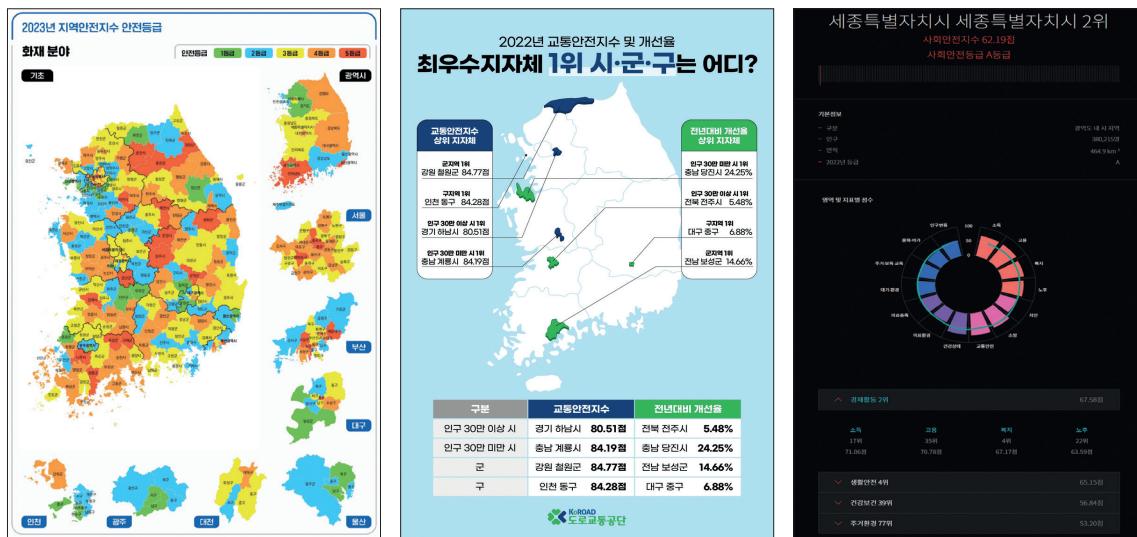
들어가며

오늘날 우리 사회는 건설 현장 붕괴, 물지마 범죄, 건축물과 전기차 화재 등 다양한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경험 중이다. 안전에 대한 최첨단 신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사고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안전한 생활은 우리의 기본적인 일상이지만, 다양한 원인에 의해 우리의 일상이 상처받았다. 많은 이들이 사고 현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함께 가슴 아파했다. 언론에서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잊히는 중요한 단어 중의 하나이다.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분야별로 지역의 안전수준을 측정하여 다양한 채널로 지역사회의 안전도와 안전 지도를 공개하고 있어, 약간의 노력만 기울이면 해당 지역사회의 분야별 안전수준에 관한 지수와 지도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혹자는 행정구역 단위에서의 안전도 측정, 상대적인 등급 측정, 시민 수요 미반영 등 다양한 이유로 해당 지수와 지도가 쉽게 공감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필자도

이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 있어, 지역안전도를 평가하는 지수와 안전 등급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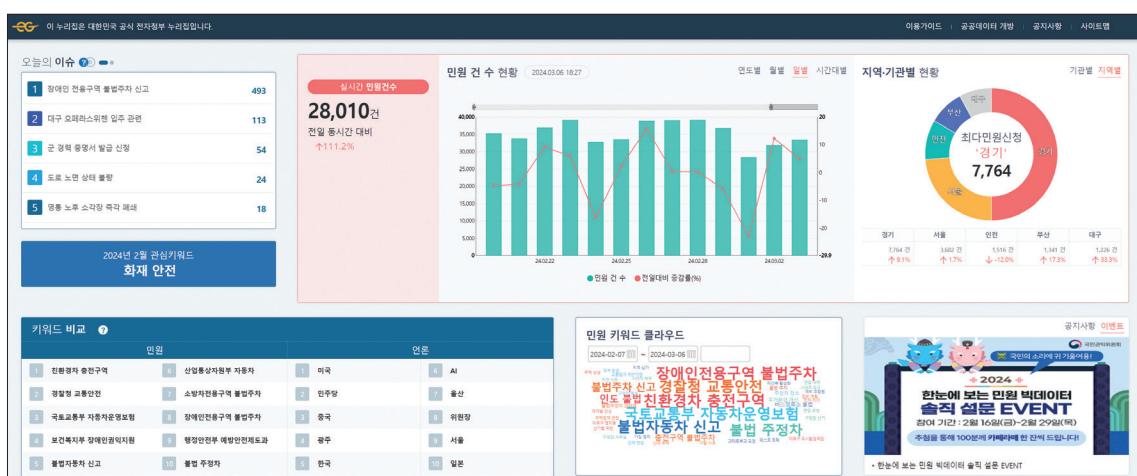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지역안전도 측정 지수

우리나라 지역의 안전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 안전지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지수', 그리고 언론사 머니투데이의 '사회안전지수' 등이 있다. 또한, 지역의 안전 관련 민원을 파악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가 있다. 각 지수에 적용되는 지표는 지수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 지역안전지수와 교통안전지수는 사망자와 사고 수를 핵심지표로 사용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체를 대상으로 정량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수를 산출한 후, 2차로 상대적인 안전 등급을 산출한다. 반면, 사회안전지수는 안전 측정 지표 외에 경제활동 지표도 함께 사용하여 자치단체의 지수를 산출하나, 설문 조사에서 표본이 확보되지 않은 자치단체는 제외하므로 모든 자치단체의 지수가 산출되지 않는다.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02.19.) (좌),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2023.12.06.) (우), 사회안전지수 홈페이지(mt.co.kr/ksi) (우)

[그림1] 2023 화재 분야 지역안전지수(좌), 2022 교통안전지수 및 개선율(중), 2023 사회안전지수(우)



출처 : 학습에 보는 미워 빅데이터 홈페이지(bigdata.epeople.go.kr/)(2024.03.06.전소)

[그림2] 2024년 2월 미월별선 결과와 전기예보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는 안전도를 집중적으로 측정하지 않아 해당 지역의 안전수준 측정에 활용되지는 않지만, 분석 결과를 통해 해당 지역의 안전도와 안전 위해 요소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림 2]는 2024년 2월에 신고된 민원분석 현황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관심 키워드는 '화재 아동'으로 분석되었다. 자치단체별로 미워 혐의를 파

악할 수 있어, 지역사회에서 해당 기간에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측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각 지수별 산출과정을 살펴보면, 지역안전지수는 특·광역시, 시·도, 시·군·구 그룹별로 정량지표를 활용하여 상대평가를 통해 안전도를 1~5등급으로 산출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해당 분야의 안전도가

[표1] 지역안전도 측정 지수 비교

| 구분 | 지역안전지수 | 교통안전지수 | 사회안전지수 | 민원 빅데이터 |
|----------|-----------------------------|--------------------------------------|-----------------------------|--------------------------|
| 분야 |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 교통사고(사고 유형 등) | 생활안전, 경제활동, 건강보건, 주거환경 | 분야별 민원 |
| 지표 유형 | 객관·정량지표 (일부 주관·성정지표) | 객관·정량지표 | 객관·정량지표+주관·정성지표 | 정량지표 |
| 지수산출 방식 | 상대평가 | 상대평가 | 절대평가 | 해당 없음 |
| 등급 산출 기준 | 광역단체, 기초지자체 | 인구 30만 기준 시 및 기초지자체 (옹진군, 울릉군 제외) | 설문조사 결과가 확보된 기초지자체 | 광역단체, 기초지자체 |
| 정성지표 활용 | 생활안전분야 :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 | 해당 없음 | 표본이 확보된 자치단체의 주민 설문조사 결과 반영 | 해당 자치단체 내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측 |
| 비고 | 분야별 안전 등급 활용 | 교통사고 분야별 사고 예방 기초자료 | 자치단체 정책 방향 반영 | 해당 자치단체 발생 가능 안전사고 예측 |

같은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교통안전지수는 인구 30만 이상 · 미만 시와 군, 구로 그룹을 구성하여 정량지표와 상대평기를 통해 그룹별 등급을 산출한다. 지수 값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양호하다. 반면, 사회안전지수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인 지역주민 설문 조사 결과를 지수 산출과정에 반영하며, 지수 값의 결과가 해당 자치단체의 안전도를 의미한다. 민원 빅데이터는 다른 지수와 같이 안전도를 산출하지 않는다(표1. 참조).

현실적인 안전등급 산출체계 개선 필요: 공간 단위

지수 값과 안전 등급은 해당 행정구역의 안전도를 대표하지만, 실제로 해당 행정구역 전체의 안전수준을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자치단체 A는 b지역과 c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b지역은 빈번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안전 개선 사업이 요구되는 취약지역이지만, c지역은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안전도가 양호한 지역이다. 하지만, 안전등급은 A라는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등급상 b지역과 c지역의 안전도는 동일하다. 즉, 안전등급은 일괄적으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산출되기 때문에 지역의 현실적인 안전도를

대표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설득력 있는 지역안전도 산출방식 개선 필요: 절대평가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지역안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기를 통해 안전등급이 산출될 필요가 있다. 이해를 돋기 위해 D 그룹 내 f지역(안전등급: 1등급, 지수 값: 70점)과 E 그룹 내 g지역(안전등급: 5등급, 지수 값: 80점)이 있으며, 각 그룹 내 소속된 자치단체의 수도 동일하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안전등급이 높은 f지역이 g지역보다 지역의 안전수준이 양호할 것인가? 아니면, 지수 값이 큰 g지역이 f지역보다 안전수준이 양호할 것인가? f지역은 D그룹 내에서는 안전수준이 양호한데 실질적인 지역안전도도 양호할 것인가? E그룹 내에서 최하위인 g지역에 실질적으로 지역의 안전수준에 대한 개선사업이 필요한가? 등의 질문과 같이, 상태평가 기반의 산출방식은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지수와 안전등급은 실질적인 해당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정확히 진단해야 하지만, 상태평가 기반 지수 체계로는 실질적인 안전도 측정이 쉽지 않다. 최상위와 최하위가 일정 비율로 구분되어야 하는 산출 체계는 현실적인 지역의 안전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모두가 공감하는 지역 안전수준 평가 체계 필요:

지역사회 수요 반영

안전등급을 기반으로 취약지역의 안전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해당 지역주민의 안전사업에 대한 안전체감도는 높지 않다. 필자는 안전개선 사업 완료 지역에 방문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관적이고 형식적인 인프라 설치가 아닌 해당 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역사회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사회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는 ‘안전신문고’, ‘민원’ 등 다양한 채널에 따라 수집할 수 있는 시민수요 데이터들이 존재하며, 각각으로 분석되어 정책에 활용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의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를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안전지수는 설문조사 결과를 정성 지표로써 산출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안전개선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각각의 고민이 요구된다.

나오며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나 안전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깊어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잊어버리고 떠나야 안다는 말이 있듯이 안전도 그렇다. 누구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안전개선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지만, 안전은 항상 ‘노멀’이었다. 기본적으로 안전한 사고(思考)를 할 때이다. ☺

[참고문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02.19.),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 공표.
-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2023.12.06.), 2022년도 교통안전지수 결과 발표.
- 머니투데이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홈페이지(mt.co.kr/ksi)
(2024.03.06.접속).

서울시 청년 여성 1인가구의 주거환경과 범죄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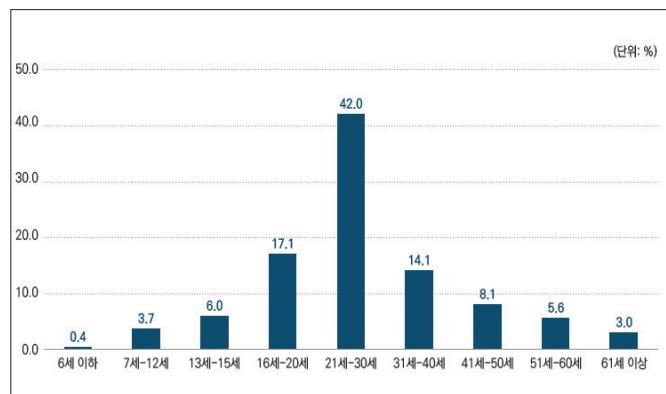


김꽃송이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최근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면서 여성 1인가구의 주거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년 여성은 다른 1인가구에 비해 스토킹, 데이트 폭력, 주거침입 등 범죄로부터 훨씬 취약한 위치에 있어, '방범·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실제로 여성취약범죄의 피해자 및 발생장소 특성(21년 기준)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은 대부분 20~30대 청년 여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거지(27.7%)와 노상(10.3%)에서 다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 선행 연구에서도 주거환경에서 안전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 여성 1인가구가 다수 존재함을 입증한다.

청년 여성 1인가구의 주거지는 대부분 주거와 상업용도가 혼재된 대



주 : 성폭력범죄 총 발생건수 32,898건

자료 : 서울고등검찰청(2022), p.56

[그림1] 2021년도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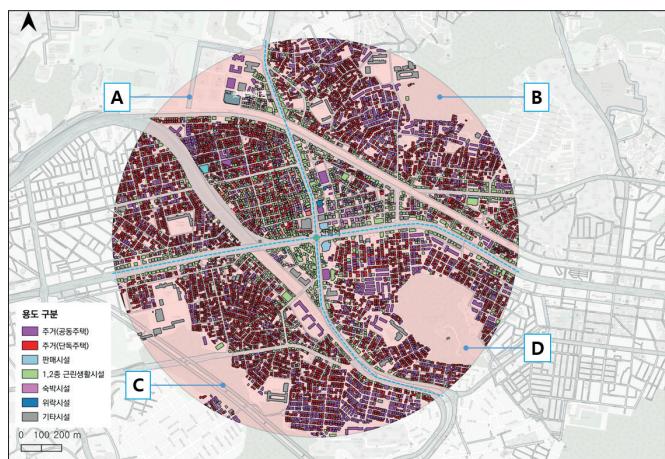
1) 서울고등검찰청(2022), p.55~56

학교 주변 또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데,²⁾ 특히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고시원·원룸 등의 주거유형 밀집해있고 소득 수준이 낮으며 상업시설 배후주거지에서 안전 불안감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2. 신림동 여성취약범죄 발생 경향

신림동은 청년 여성 1인가구의 인구밀도가 높고 여성취약범죄와 관련된 112 핫스팟이 밀집해있는 곳으로, 서울시 내에서 '방범·범죄' 안전이 취약한 대표지역으로 꼽힌다. 해당 지역에서 최근 1년(22년 1월~12월) 간 발생한 여성취약범죄는 총 273건으로, 신림역을 기점으로 4개 구역별(A~D)로 범죄 발생 양상에 차이가 나타난다.³⁾

각 구역별 여성취약범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A구역이 90건으로 가장 많으며 C구역(83건), B구역(71건)순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D구역의 경우 범죄발생 건수가 29건으로, 다른 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출처 :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2023), “용도별건물정보”, <http://openapi.nsdi.go.kr/nsdi/eios/ServiceDetail.do> (검색일: 2023.08.08.), 김꽃송이 외(2023), p.80

[그림2] 신림동 여성취약범죄 발생 현황 분석 범위와 구역(A~D) 구분

[표1] 신림역 인근 여성취약범죄 발생 장소 및 건수

(단위: 건, %)

| 구분 |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 주거 침입 | 데이트 폭력· 협박 | 스토킹 | 총계 | |
|-----|----------------------|---------------|------------------|--------------|-----|---------------|
| | | | | | 소계 | 합계 (비율) |
| A | 주거 내 | 9 | 8 | 21 | 2 | 40 (33%) |
| | 주거 외 | 19 | 11 | 13 | 7 | 50 |
| B | 주거 내 | 12 | 11 | 15 | 1 | 39 (26%) |
| | 주거 외 | 22 | 1 | 3 | 6 | 32 |
| C | 주거 내 | 7 | 4 | 11 | 3 | 25 (30.4%) |
| | 주거 외 | 42 | 4 | 11 | 1 | 58 |
| D | 주거 내 | 5 | 8 | 8 | 3 | 24 (10.6%) |
| | 주거 외 | 2 | 0 | 0 | 3 | 5 |
| 총 계 | 118 (43.2%) | 47 (17.2%) | 82 (30%) | 26 (9.5%) | 273 | (100%) |

주 1 : 주거 내-주거지 내부, 주거지 공동공간, 주차장

주 2 : 주거 외-노상, 불상, 사무실, 상가·상점, 숙박업소, 유통주점, 학교, 회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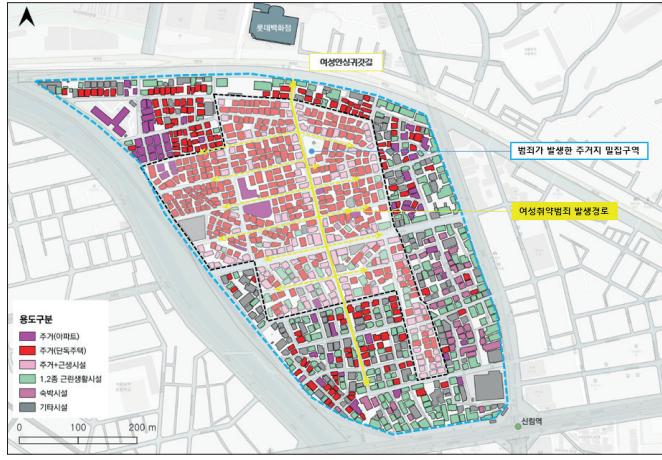
출처 : 관악경찰서(2023), p.1, 김꽃송이 외(2023), p.81

범죄 발생 경로와 장소적 특성을 살펴보면, A구역은 롯데백화점 여성 종사자가 퇴근하는 9~10시 무렵에 ‘여성안심귀갓길~신림역 또는 주거지로 향하는 경로(신림동7길 50~봉천로 214, 460m)’에서 뒤따라 가기 범죄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⁴⁾ A구역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좁은 골목길과 낮은 야간 조도를 갖고 있으며 심야시간대 유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특성이 있다. 북쪽에는 롯데백화점이 위치하는데, 백화점 전체 직원 중 약 80%가 여성 종업원(21년 기준)으로, 대부분 심야시간대에 여성안심 귀갓길을 따라 퇴근하는 루틴을 가진다. 여성안심귀갓길은 유동인구가 많아 자신을 노리는 가해자가 뒤따라오고 있는지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간적·행태적 특성으로 인해 여성안심귀갓길에서 이어지는 작은 골목길을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할 때, 가해자가 이를 뒤따라가 범죄를 시행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난다. 또한 신림역 인근 술집과 유흥업소 주변에서 귀가를 위해 이동하는 여성도 많아 뒤따라가기 범죄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2) 손동필 외(2020), pp.32~37

3) (분석 범위) 신림역 인근 반경 1km(분석 범죄) 성범죄, 주거침입, 데이트폭력·협박, 스토킹 등 여성취약범죄(분석 내용) 범죄유형별 발생 장소(주거 내 또는 주거 외)

4) 관악경찰서(2023), p.1



출처 : 김꽃송이 외(2023), p.85 재구성

[그림3] A구역 여성취약범죄 발생경로

B구역은 주거지보다는 나이트, 모텔 등 유흥업소와 숙박업소가 다수 위치하며, 신림역 부근에서 범죄가 다수 발생한다.

C구역은 '23년 신림역 살인사건 발생지로, B구역과 같이 상업지역이 넓게 분포하며 클럽 2개소가 존재하여 밤늦은 시각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다수 나타난다. 다만 범죄 발생 비율은 30.4%로 높은 편이나, 유동인구에 따른 범죄가 다수를 차지하며 주거 내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25건으로 다른 구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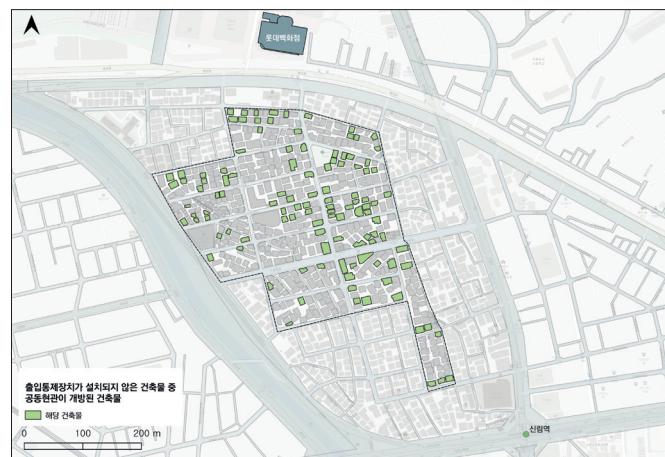
D구역은 타임스트림 쇼핑몰,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다른 구역에 비해 범죄발생 건수가 10.6%로 적어 상대적으로 '방범·범죄' 안전이 확보된 곳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취약범죄 발생 건수와 발생 경로, 주거지가 많이 분포하는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신림동 내에서는 A구역이 청년 여성 1인가구 안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신림동 청년 여성 1인가구의 주거안전 위험요인

신림동 A구역(대상지) 내에서 발생된 여성취약범죄 수법을 살펴보면, '공동현관 또는 세대현관'을 통한 침입(2건), '공용화장실' 침입(2건), '창문'을 통한 침입(1건), 뒤따라가기(1건)를 통해 범죄가 다수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대상지는 건축물 '공동현관 또는 세대 출입문, 세대 창문'이 방범·범죄에 취약한 환경으로 조성되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는 CCTV와 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이 다수 조성되어 있으며, 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321동) 중 공동현관을 열어놓은 사례(125동, 38.9%)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지하 건축물(총 186동)' 중 방범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도 38동(20.4%)으로 상당수를 차지한다. 반지하 건축물의 세대창문은 가로나 노상주차장에 접한 경우가 많아 범죄자의 잠재적 침입통로로 활용될 수 있으며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사생활 침입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어, 향후 해당 건축물에 우선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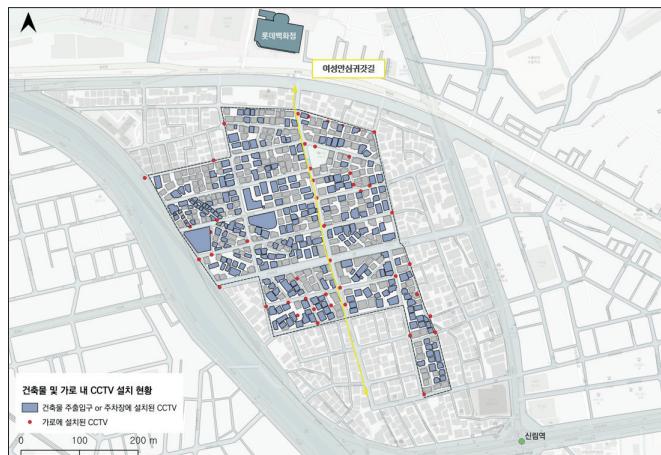
출처 : 김꽃송이 외(2023), p.97

[그림3-21] '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 중 공동현관이 개방된 건축물

필로티 공간은 낮에는 개방감을 줄 수 있으나 야간에는 사각지대를 유발하며,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공용출입구가 가려져 범죄에 취약한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상지 내 필로티 주차장의 주거안전 위험요인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CCTV(110동, 80.9%)와 조명(114동, 83.8%)이 설치되어 있으나, CCTV와 조명이 모두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22동, 16.2%)도 일부 발견되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도 대부분 CCTV가 설치되었음을 알리는 안내사인을 함께 게시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방범시설물은 각기 다른 디자인과 불규칙한 간격으로 조성될 경우, 범죄자의 불안감은 감소시키고 청년 여성 1인가구의 불안감은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일정한 디자인과 간격으로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상지 가로에 설치된 CCTV를 살펴보면, 대부분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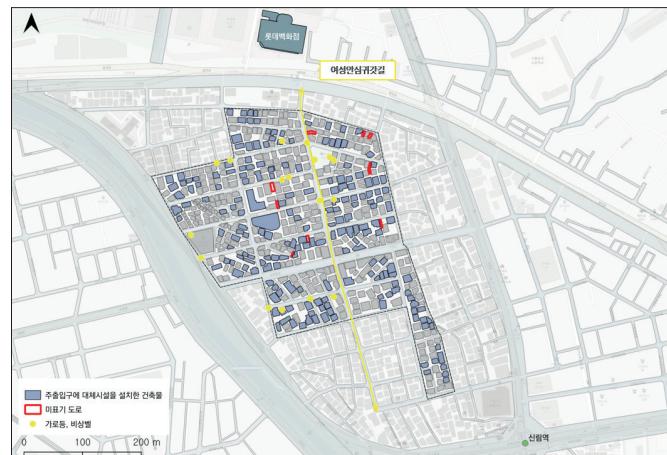
성안심귀갓길을 따라 조성되어 있으며, 그 외 CCTV는 골목 안에 불규칙하게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CTV 가시범위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도 상당수 존재한다. 가로등·비상벨도 CCTV와 마찬가지로 여성안심귀갓길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 가로등·비상벨은 골목 안에 불규칙한 간격으로 조성되어 있어 방범시설물 설치 위치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대상지 내 설치된 CCTV, 가로등, 비상벨, 안심반사경, 112 신고사인 등의 방범시설물의 디자인은 가독성과 가시성이 떨어져 일관된 디자인 적용과 정보 문구 조정이 필요하다.



출처 : 김꽃승이 외(2023), p.103

[그림3-27] 건축물 주출입구 및 주차장, 가로에 설치된 CCTV 현황

여성안심귀갓길을 중심으로 양 옆쪽의 골목은 미로형의 가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미로형 공복길은 격자형 골목길보다 '감시 강화' 관점에서 범죄에 취약한 환경으로 볼 수 있다. 지도상에 표기되지 않은 좁은 골목과 막다른 골목도 존재하는데, 해당 골목 인근에 조성된 건축물 중에는 주출입구에 CCTV, 조명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도 있어 야간에 청년 여성 1인가구의 안전 불안감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출처 : 김꽃승이 외(2023), p.106

[그림3-32] 주출입구에 대체시설을 설치한 건축물과 미표기 도로, 가로등·비상벨 위치



출처 : 김꽃승이 외(2023), p.107

[그림3-33] 실태조사 대상지 내 안심반사경, 112신고안내 디자인

4. 신림동 청년 여성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방향

신림동 청년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의 주거안전 실태와 여성취약범죄 수법을 토대로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① 건축물 주출입구

건축물 주출입구(공동현관)는 범죄자의 주거침입 통로로 다수 이용되고 있으므로, '접근 통제'의 관점에서 비밀번호를 통한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시 강화'의 관점에서 건축물 주출입구에 CCTV와 CCTV 안내판, 조명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CCTV는 야간에 사각지대와 어두운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필로 티 건축물 위주로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CCTV 설치 시 안내판을 함께 설치하고, 새롭게 설치할 CCTV 안내뿐만 아니라 기준에 설치된 시설물의 디자인을 일관성 있게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지도상에 표기되지 않은 좁은 골목과 막다른 골목은 야간에 어두운 경관을 연출하므로, ‘영역성 강화’, ‘활동의 활성화’ 관점에서 건축물 주출 입구에 조명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② 세대 창문

반지하 건축물의 경우,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의 측면에서 세대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림동은 범죄취약지역인 동시에 침수다발지역에 해당되므로, 침수 시 개폐가 용이한 안쪽 개폐형 방범창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⁵⁾

③ 방범시설물

신림동의 CCTV, 가로등·비상벨, 안심반사경, 112 신고사인 등의 방범시설물은 설치 주체와 시기가 모두 달라 설치 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디자인도 통일되지 않은 한계가 나타난다. 이에 CCTV, 가로등·비상벨 설치 간격이 일정하도록 위치를 조정하고, CCTV 가시범위가 벽 등에 가로막힌 시설물은 CCTV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안심귀갓길을 중심으로 안쪽으로 조성된 주거지 밀집지역에 우선하여 방범시설물 위치를 조정하고 방범시설물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맺으며

현재 지자체에서는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방범시설물 정비사업을 통해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인구 및 주거 유형, 물리적 환경이 다르고 해당 지역에서 다수 발생되는 범죄 유형과 범죄 수법, 주거침입 경로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용적인 범죄예방환경설계 대안으로 제시되는 CCTV, 비상벨 등의 안심홈세트 설치에 치중되는 한계가 나타난다.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디자인 솔루션이 필요하며, 여성 1인가구 세대 및 안전 요소별 특성을 유형화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강민경(2023),『YTN』, 2023.6.13. 일자, “신림동 반지하촌 다시가보니...침수 위험 여전, 대책은 부족”,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131046595572 (검색일: 2023.10.30.)
- 관악경찰서(2023). “신림역 주변 범죄발생 현황 자료 분석 · 공유”. 관악경찰서 내부자료
-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2023). “용도별건물정보”, <http://openapi.nsdi.go.kr/nsdi/eios/ServiceDetail.do> (검색일: 2023.08.08.)
- 김꽃송이 · 김상호 · 양은영(2023).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의 주거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건축공간연구원
- 서울고등검찰청(2022). “2022 범죄분석–2021년 주요 범죄유형별 특성”, 서울 고등검찰청
- 손동필 · 현태환 · 박유나(2020). “1인가구 밀집지역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 라인”, 건축공간연구원

5) 강민경(2023),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131046595572

FOCUS
도시와 안전

범죄예방분야에서의 VR 활용방안

허재석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현재 우리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함에 따라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기술의 파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등 최첨단 기술과 기존 산업이 연계, 결합하여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이하 VR)은 비교적 오래전 개발된 기술이나, 최근 관련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성장으로 글로벌 기업에서 VR과 관련된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는 등 새롭게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이다. VR 기술은 우리가 경험하기 어렵거나 불가한 상황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이에 오락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다가 점차 VR 관련 기술이 고도화되고 다양한 산업과 연계가 가능하면서 의료, 교육, 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커지고 있다.

범죄예방 분야에서도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스마트 CCTV, 스마트 가로등,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위험도 예측 시스템

등 최신 기술과 접목한 다양한 스마트 치안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다. VR 역시 범죄예방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기술로 비교적 치안 현장에서 이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연구 분야에서는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VR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환경구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현실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은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장점으로 VR은 연구 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기술이며, 향후 치안 현장에서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가상 시뮬레이션이나 교육 등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VR을 활용한 범죄예방 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범죄예방 분야에서의 VR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범죄예방 분야에서의 VR 연구 동향

VR은 현실과 흡사하지만 인공적으로 구축한 환경으로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에 많은 산업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관련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구 분야에서도 현장실험의 대안으로서

VR 실험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연구 분야에서는 특정 요인을 통제하면서 반복 실험할 수 있는 VR 기술의 장점으로 인해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 범죄 분야에서도 VR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범죄 관련 연구는 다양한 물리, 사회적 환경과 함께 특수한 상황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험설계가 필요한 범죄 연구에서는 범죄나 범죄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이나 환경특성에 대해 현장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VR 기술은 실험하고자 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요인을 통제하며 반복적으로 실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죄 분야의 연구에서 굉장히 유용하며 활용 가치가 높은 실험 도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VR 기술의 장점으로 범죄 분야에서도 관련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이하, CPTED)는 침입범죄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설계기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최근 진행된 연구는 VR을 활용한 침입 및 절도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가 대다수였다. 또한 CPTED는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저감하는 것 역시 주요한 목적 중 하나로 이와 관련된 연구도 다수 있었다.

침입범죄 예방과 관련된 연구는 기존 이론 및 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환경설계요소를 VR 기술을 활용하여 각 요소들의 범죄예방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침입범죄는 주택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범죄유형으로 관련 연구에서도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주거지역 내 다양한 주택유형을 가상 환경으로 구축하고, VR 장비를 통해 해당 공간에서의 범죄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일부 CPTED 요소들은 침입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은 변수도 있었다. 또한 자연적 감시 등을 위해 투시형이나 낮은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범죄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연구 결과가 실제 범죄 의사에 미치는 요소와 완벽하게 부합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통제하면서 CPTED 요소들의 범죄예방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부분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서구사회에서 발전한 CPTED 이론이 국내 환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출처 : 박소연 외. (2021)

[그림1] 주거지역 가상환경 및 개별 주택 유닛 예시

VR을 활용한 또 다른 주요 연구는 조도와 범죄 두려움에 관한 연구이다. CPTED는 범죄예방과 함께 범죄두려움 저감도 주요한 목표로 VR 관련 연구에서는 조도 변화에 따른 범죄 두려움의 저감 효과에 관한 연구가 다수 있었다. VR 환경은 크게 Simulated VR과 Recorded VR로 구분할 수 있다. Simulated VR과 Recorded VR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상의 현실이 시뮬레이션 환경인지 아니면 실제 영상 기반의 환경인지의 차이이다. Simulated VR은 원하는 환경을 다양하게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Recorded VR은 실제 영상을 기반으로 구축한 환경으로 현실과 매우 흡사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게임 엔진 기술 발전 등 시뮬레이션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현실과 매우 유사하며 현장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 구현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조도 환경 변화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저감 효과를 Simulated VR과 Recorded VR을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두 실험 방법론 모두 유사하게 조도가 높아질수록 범죄두려움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두 실험을 통하여 가로등과 함께 다양한 도시 광원의 범죄 두려움 저감 효과, 적정 조도의 기준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출처 : 손동필 외. (2023)

[그림2] 시간대별 조도변화에 따른 가상환경 예시

우리나라의 도시 공간은 매우 다양하며 그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태 특성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범죄 발생이나 범죄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적 요인도 다양하다. 이러한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특징으로 인해 현장 기반의 실험을 진행하는데 많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에 반해 VR을 활용한 실험은 앞서 통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요인들의 통제가 가능하며, 특정 상황 및 환경에 대해 반복적으로 실험하여 대량의 표본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VR 실험은 가상의 환경 기반으로 실제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극복 가능한 부분이며, 향후 현장 실험의 대안 및 보완재로서 그 활용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론은 현재 범죄 관련 연구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앞으로 치안 현장에서도 활용 가능성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3. 범죄예방 분야에서의 VR 활용 가능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예방 분야에서 VR 기술은 주로 연구 분야

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시 VR 기술은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물 설치 중심으로 이뤄지거나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기존 사업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추진된 사업일 경우 범죄의 예방효과는 크지 않으며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장기적으로 무의미한 시설물로 방치되어 재정적, 행정적 낭비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사업 추진 시 가상의 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 환경개선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전 국토의 가상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과 연계하여 VR 기술을 통한 사업 추진 시뮬레이션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예방 교육 분야에서도 VR 기술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절한 시설물 선정 및 배치 등 다양한 환경설계요소를 적용하는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 및 조직 체계상 많은 현장에서 치안 관련 담당자의 잦은 교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담당자 간 역량 편차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사업의 질에서도 드러난다. 효율적인 재정 투입과 효과적인 사업 성과를 위해 담당자의 역량 향상이 필요하며, VR 기술은 담당자 교육 시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외에도 다양한 범죄 발생의 상황 속에 대처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도 VR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4. 나오며

VR 관련 기술은 점차 고도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그에 반해 아직 치안 현장에서는 VR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고민도 미흡한 실정이다. VR을 활용한 범죄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범죄예방과 치안분야에서의 VR의 활용 가능성과 가치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치열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의 파도 속에서 범죄 및 치안 분야에서도 VR 등의 다양한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

요가 있다. 스마트 CCTV 등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기술들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폭넓은 최신 기술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보된 스마트 범죄예방 환경설계 분야로 발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이 매우 발전한 국가 중 하나로서 향후 스마트 범죄예방 및 치안 분야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박소연, 강경연, 이경훈. (2021). 주거침입절도 범행대상 선택 실험 도구로서의 가상현실과 이미지에 대한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7(5), 77–88.
- 손동필, 현태환, 박유나. (2021). 범죄두려움 저감을 위한 도로조명 조도 기준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손동필, 임보영, 허재석. (2022). 가상환경을 활용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요소 도출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손동필, 임보영, 허재석. (2023).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에서의 가상현실 활용. *auri brief*, No.267 . *건축공간연구원*.
- Park, S. Y., & Lee, K. H. (2021). Burglars' choice of intrusion routes: A virtual reality 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74, 101582.
- Son, D., Hyeon, T., Park, Y., & Kim, S. N. (2023).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ighttime illuminance and fear of crime using a quasi-controlled experiment with recorded virtual reality. *Cities*, 134, 104184.

FOCUS
 도시와 안전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두려움 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



임보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1.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외국인 밀집지역의 확대

가장 최근인 2021년 1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134,569명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의 4.1%에 달하는 규모이다. 2011년도에 국내 체류 외국인이 1,395,077명에 불과하였으나, 10년 만에 그 규모가 1.5 배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 증가가 우리나라 도시 공간에 가져올 변화는 다양하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외국인을 경제활동인구로, 인구감소지역에는 활력을 창출하는 생활인구, 정주인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밀집지역이 지방 도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외국인 인구 증가를 고려하여 2022년도 기획재정부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법무부·행안부·지자체 합동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서는 우수 외국인 유입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이민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유치, 이민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이민을 촉진하는 (가칭)이민청 설립을 중요 정책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결혼 이주자, 이주노동자, 난민들의 체류, 고용 및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조기 적응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는 데 집중해왔다.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 이제는 외국인들의 적응을 넘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들의 이주, 정착, 다문화적 수용의 문제는 일상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근린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린 단위에서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내·외국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린 단위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본고는 2023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일반보고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균린환경 실태 분석: 범죄예방환경설계(OPTED) 관점에서」에서 일부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자 한다.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은 문화적인 차이, 편견으로 인해 집단 간 이질감과 긴장감이 높고, 특히나 범죄, 치안안전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큰 공간이다. 따라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두려움 완화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였다.

2. 외국인 밀집지역 심층 분석 사례지역 조사 및 선정

외국인 밀집지역은 전국 지자체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유형과 특성 또한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심층 분석이 필요한 사례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인구 및 지역 데이터를 조사·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경기도 체류 외국인이 714,497명(33.5%)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서울 426,743명(20.0%), 인천의 134,714(6.3%)와 합친 수도권의 외국인 수는 1,275,954(59.8%)로 전국 체류 외국인 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1] 시·도별 외국인 현황

| 시·도 | 총인구 수(명) | 외국인 수(명) |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
|-----|------------|-----------|---------------------|
| 계 | 51,738,071 | 2,134,569 | 4.1 |
| 서울 | 9,472,127 | 426,743 | 4.5 |
| 부산 | 3,324,335 | 72,361 | 2.2 |
| 대구 | 2,387,911 | 51,140 | 2.1 |
| 인천 | 2,957,044 | 134,714 | 4.6 |
| 광주 | 1,475,262 | 41,181 | 2.8 |
| 대전 | 1,479,740 | 33,078 | 2.2 |
| 울산 | 1,120,753 | 34,800 | 3.1 |
| 세종 | 366,227 | 9,335 | 2.5 |
| 경기 | 13,652,529 | 714,497 | 5.2 |
| 강원 | 1,521,890 | 37,230 | 2.4 |
| 충북 | 1,624,764 | 73,529 | 4.5 |
| 충남 | 2,175,960 | 124,492 | 5.7 |
| 전북 | 1,787,053 | 60,684 | 3.4 |
| 전남 | 1,778,124 | 66,871 | 3.8 |
| 경북 | 2,635,314 | 98,197 | 3.7 |
| 경남 | 3,305,931 | 123,074 | 3.7 |
| 제주 | 673,107 | 32,643 | 4.8 |

출처 : 행정안전부(2022,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ir/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LELMvFbsWDR0AzGx8DdB3ezU.node2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96092, 검색일: 2023. 06.07.)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이를 시군구 단위로 살펴보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선별 기준을 활용하여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이 5%, 10% 이상이면서, 외국인 수 1만 명 이상, 5만 명 이상인 시군구를 도출한 결과, 충청권에서는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아산시 4곳이 포함되었고, 동남권에는 김해시, 울주군 2곳이 포함되었다. 서귀포시와 경주시, 경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27곳은 수도권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표2]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외국인 집중거주구역 선별

| 구분 | 인구 대비 10% 이상 지역 | 인구 대비 5% 이상 지역 |
|--------------|--------------------------------|--|
| 외국인 수 5만명 이상 | 안산시, 시흥시, 구로구, 영등포구 | 수원시, 화성시, 부천시 |
| 외국인 수 1만명 이상 | 안성시, 포천시, 음성군, 서울 중구, 진천군, 금천구 | 김해시, 관악구, 광산구, 연수구, 동대문구, 광진구, 광주시, 오산시, 경주시, 용산구, 서대문구, 경산시, 양주시, 이천시, 종로구, 울주군, 서귀포시, 당진시, 평택시, 천안시, 아산시, 김포시, 부평구 |

출처 : 행정안전부(2022,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ir/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LELMvFbsWDR0AzGx8DdB3ezU.node2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96092, 검색일: 2023. 06.07.)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지역별로 차별화된 외국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사점이 큰 연구 대상지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에서 도출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및 지역 경찰의 자문을 거쳐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지역이면서 내외국인이 근린 생활권 내에서 서류 접촉하고 있는 지역을 심층분석 대상지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①수도권 저층 주거지역-서울 관악구 신사동 일원, ②지방도시 원도심 지역-경남 김해시 동상동 일원, ③농어촌 중심지역-충북 음성군 대소면 일원이 심층분석 사례지역으로 선정되었다.

3.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민들의 범죄 두려움 비교 분석

서울시 관악구 신사동 일원, 경남 김해시 동상동 일원, 충북 음성군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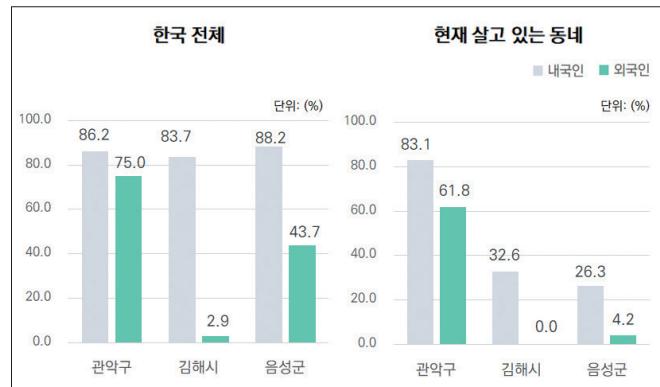
소면 일원에 거주하는 내국인 298명, 외국인 217명을 대상으로 일대 일 면접 설문조사(관악구 9월 25일~10월 9일, 김해시 10월 2일~10월 4일, 음성군 10월 2일~10월 9일)와 온라인 조사(내국인 대상)를 진행하였다. 실제 설문조사에서 인구사회 현황,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생활공간별 만족도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범죄 드려움과 관련된 설문항목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체류유형은 취업이 4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과의 동거 목적(30.9%)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체류 유형에 차이를 보였는데, 관악구 신사동 또는 인근 지역 거주 외국인은 대부분 가족과의 동거 목적으로, 김해시 동상동 또는 인근 지역 거주 외국인은 취업목적이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유학(20.0%)이나 국제결혼(17.1%)을 통해 체류하는 외국인도 일부 있었다. 음성군 대소면 또는 인근 지역 거주 외국인 대부분(70.4%)은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결혼(28.2%), 유학(6.5%), 가족과의 동거(1.4%) 순으로 나타났다.

[표3] 지역별 외국인 체류 유형

| 구분 | 전체 | 관악 | 김해 | 음성 |
|---------|-------|-------|-------|-------|
| 표본 수 | (217) | (76) | (70) | (71) |
| 취업 | 47.0 | 22.4 | 50.0 | 70.4 |
| 국제결혼 | 14.7 | 0.0 | 17.1 | 28.2 |
| 유학 | 6.5 | 0.0 | 20.0 | 6.5 |
| 가족과의 동거 | 30.9 | 76.3 | 11.4 | 1.4 |
| 기타 | 0.9 | 1.3 | 0.0 | 0.9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출처 : 연구진 작성

첫째, 내국인과 외국인이 범죄 발생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지역별로 조사하였다. 내국인과 외국인 인식하는 범죄 발생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내국인은 한국 전체에서의 범죄 발생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범죄 발생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외국인 비율은 내국인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김해시가 심층 분석 사례지역 중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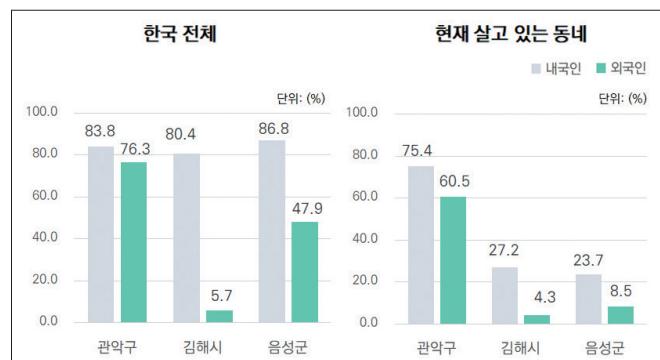


주 :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범죄 발생의 변화에 대해 '다소 증가했다'와 '크게 증가했다' 응답비율의 합계

출처 : 연구진 작성

[그림1] 지역별 범죄 발생에 대한 인식 변화

둘째, 범죄 피해에 대한 심각성에 설문결과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현재 살고 있는 동네보다 한국 전체의 범죄 피해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이, 김해시 및 음성군보다는 관악구 주민이 범죄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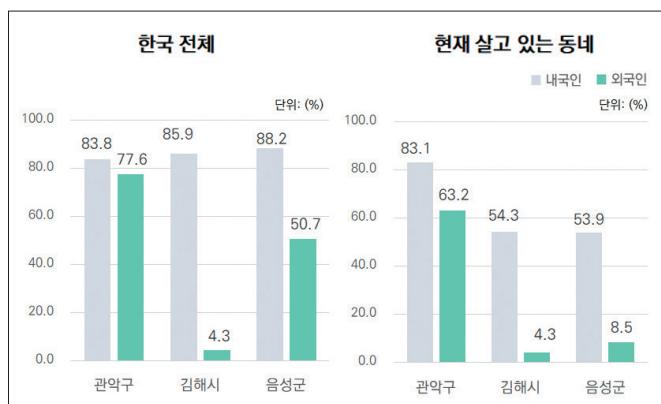
주 :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범죄 발생의 변화에 대해 '다소 증가했다'와 '크게 증가했다' 응답비율의 합계

출처 : 연구진 작성

[그림2] 지역별 범죄피해에 대한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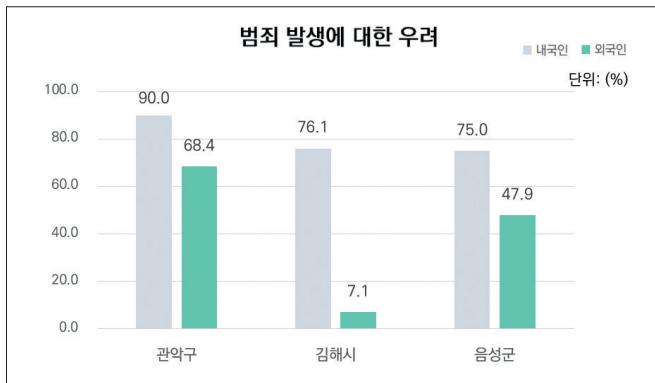
셋째, 범죄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설문결과, 범죄 발생 변화 및 범죄 피해 심각성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내국인은 한국 전체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외국인보다 더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관악구 지역의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모두 한국 전체의 범죄

발생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관악구 지역 주민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의 범죄 발생 가능성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인식하였다. 김해시 거주 내국인의 85.9%, 음성군 거주 내국인의 88.2%는 한국 전체의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나,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54.3%, 53.9%만 높다고 답하여 지역 주민들은 한국 전체보다는 거주하는 동네가 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다. 김해시와 음성군 거주 외국인 중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3%, 8.5%로 매우 낮았다.



[그림3] 지역별 범죄 피해에 대한 가능성

마지막으로, 범죄 발생에 대한 내외국인의 설문조사 결과, 내국인은 외국인에 비해 범죄 소식을 접한 이후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관악구 거주 내국인의 90%는 범죄 소식 접한 이후 범죄 발생에 대해 걱정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외국인의 응답 비율도 68.4%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김해시는 내국인의 우려된다는 비율은 76.1%로 높았으나, 외국인의 범죄 발생 우려는 7.1%에 불과해 내외국인 간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성군은 관악구보다는 범죄 발생 우려가 낮았으나, 내국인의 범죄 발생에 대해 걱정한다는 응답 비율은 75.0%, 외국인은 47.9%로 나타나 어느 정도 범죄 소식을 접한 이후 범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 지역별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

4. 정책적 시사점

범죄 두려움과 관련된 내외국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듯이, 외국인 밀집지역은 지역별 특수성이 강하여 지역 간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나 분석의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갖거나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을 위해서 Top-down 방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Bottom-up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차적으로 근린 단위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을 둘러싼 현안들을 파악하고,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내외국인들의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심층 분석 세 지역 모두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저렴하고, 물리환경이다른 지역에 비해 노후화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후 지역은 범죄에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범죄 발생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 따라서 CPTED 설계와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거주민들에게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불안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

내외국인의 범죄 두려움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세 지역 모두 내국인의 범죄 두려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내국인 범죄 발생률에 비해 외국인 범죄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편견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내외국인 주민 간의 관계, 교류 정도, 다문화 사회의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내외국인의 접촉 빈도를 높이고, 두 집단 간에 긍정적인 인식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도시 재생센터, 다문화치안센터,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이 매개가 되어 내외국인의 접촉 빈도를 자연스럽게 늘려갈 수 있다. 실제로 김해시 동상동 다문화치안센터는 내외국인들의 생활 민원 해결소이자 부동산, 일자리 등의 정보 교류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타 센터, 기관

과의 협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참고문헌]

- 임보영·최창성·허재석. (2023). 외국인 밀집지역의 균린환경 실태 분석: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관점에서. 건축공간연구원

다문화 사회의 범죄 현황과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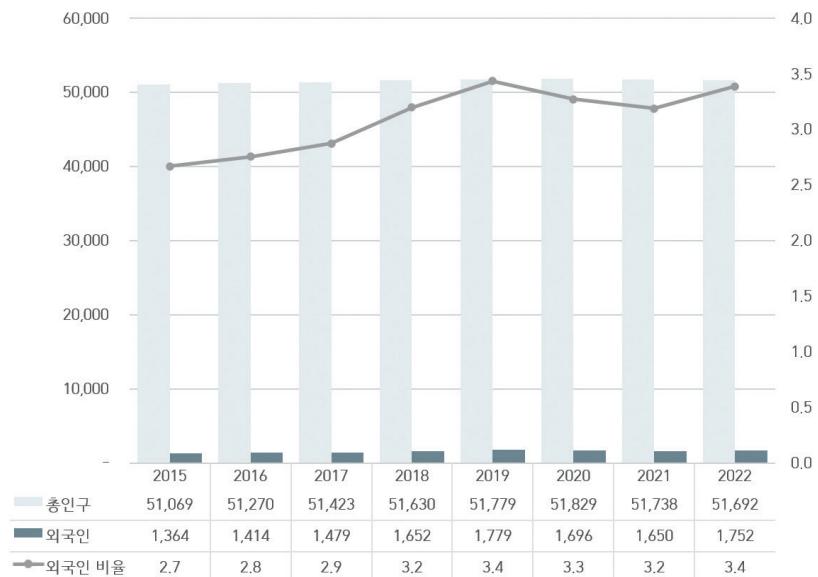
강수진
중앙대학교 강사

1. 들어가며

2017년 크게 흥행한 영화 ‘범죄도시’는 잔인한 범죄를 중국동포(조선족) 출신의 폭력조직을 소탕하는 강력반 형사들의 이야기를 다했으며, 같은 해 개봉한 ‘청년경찰’ 또한 중국동포가 극악무도한 범죄 집단으로 그려 큰 흥행을 이뤘다. 언급한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에서 중국동포를 포함하는 외국인에 대해 범죄를 일으키는 위험한 집단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미디어의 표현은 가상이라 할지라도 외국인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하고, 범죄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인식을 일으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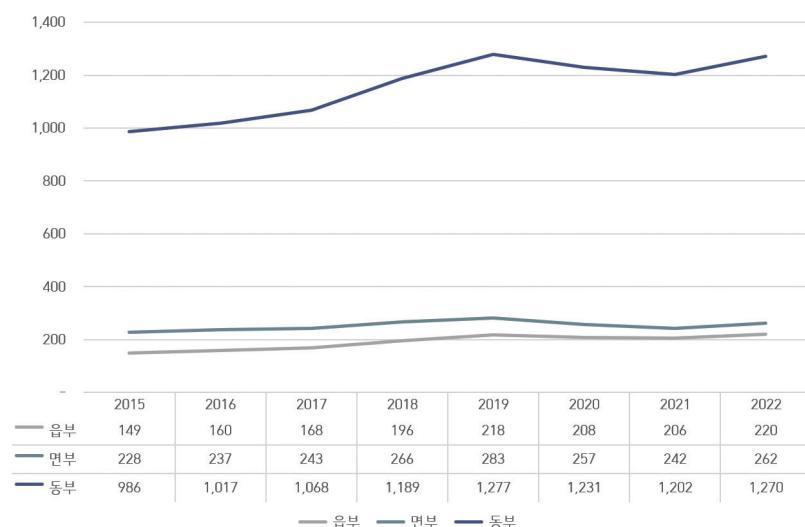
이론적으로도 외국인과 내국인의 범죄 두려움과의 관계는 설명될 수 있는데, 집단위협이론(Group Threat Theory)에 따르면 다수자인 내국인들은 소수자인 외국인들로 인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게 되어 방어기제가 발동하게 된다고 설명한다(Blalock, 1967; 노성훈, 2013).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타인에 대한 신뢰감 감소, 사회생활에 있어서 참여도 저하 등을 초래하며(Stafford et al., 2007; 최동주,

2016),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낮추게 된다(Hanslmaier, 2013).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크며, 특히 미디어나 매체에서 보여지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 모습의 과잉된 표현은 외국인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공포감을 실제 이상으로 확대하게 하고, 그들에 대한 긴장과 범죄 두려움을 증폭시키게 된다. 특히나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세계화의 확대와 심화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은 국제적 이주를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로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등 외국인의 유입도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22년 전체 인구대비 4.37%로, 코로나 기간에 주춤한 이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으며([그림 1] 참조),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과 같은 비도시지역에서도 증가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국내 거주 또는 체류 외국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며, 특히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각각 맞춤형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출처 : 인구총조사, 통계청

[그림1] 전체 인구 및 체류외국인 현황(단위: 천 명, %)



출처 : 인구총조사, 통계청

[그림2] 지역규모별 외국인 수 추이

그 중에서도 강한 편견을 갖고 있는 범죄 측면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찰을 하기 위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으키는 범죄가 실제적으로 많은지 확인하고, 시민들이 느낄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시 안전 적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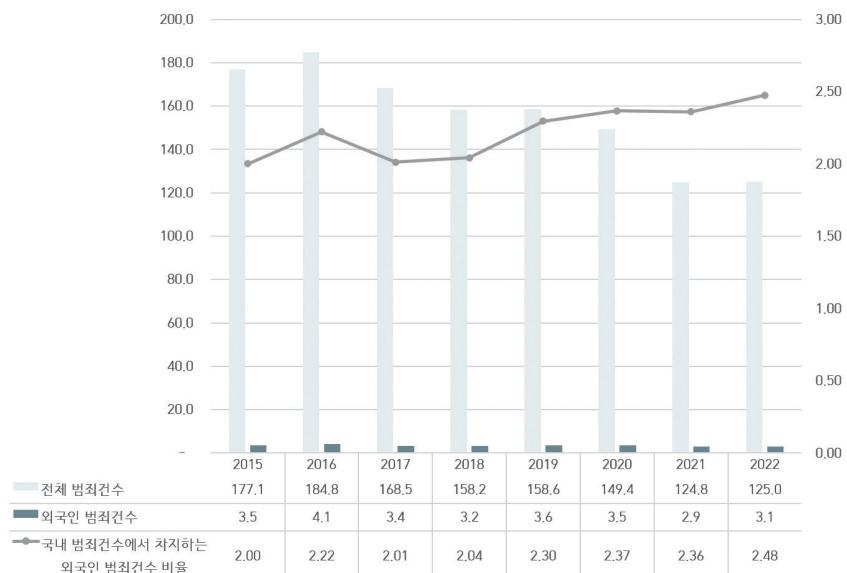
2. 외국인 범죄 현황

우리나라 전체 범죄건수에서 외국인의 범죄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림 3]과 같다. 경찰청이 매년 취합하는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 건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대로, 2.0~2.5% 수준을

오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전체 인구 대비 3.4%이기 때문에 내국인에 의한 범죄건수 가 훨씬 많은 것이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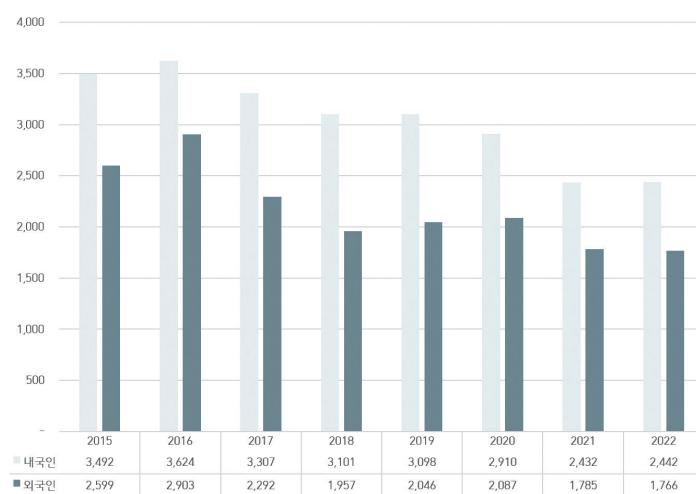
이에 따라 인구 수 대비 범죄건수를 확인하여 외국인 범죄가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지 확인하였다([그림 4] 참조). 범죄건수를 인구 10만 명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내·외국인의 범죄율을 비교적 동일 선상에

서 비교해보면, 2022년 기준 내국인 10만 명당 범죄건수는 2,442건, 외국인 10만 명당 범죄건수는 1,766건으로 외국인의 상대적 범죄 건수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의 10만 명당 범죄건수는 내국인에 비해 6~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부정적인식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 범죄통계, 경찰청

[그림3] 국내 범죄건수 및 외국인 범죄건수(단위: 만 건, %)



출처 : 범죄통계, 경찰청

[그림4] 인구 10만 명당 범죄건수

[표1]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증가 한다'에 대한 응답(단위: %)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소계 | 3.5 | 19.0 | 36.0 | 37.3 | 4.2 |
| 대도시 | 1.8 | 18.6 | 37.8 | 38.2 | 3.5 |
| 중소도시 | 3.8 | 19.4 | 33.6 | 38.1 | 5.1 |
| 읍/면부 | 6.8 | 19.0 | 37.1 | 33.1 | 4.0 |

출처 :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여성가족부

그러나 외국인으로 인한 범죄 위협 인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여성가족부의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조사자의 41.5%가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증가 한다'에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표 1] 참조).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의 증가가 범죄 발생을 초래하고, 외국인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에서는 41.7%가, 중소도시에서는 43.2%가, 읍/면부인 비도시지역에서는 37.1%가 외국인으로 인해 범죄율이 증가한다고 답변하였다. 지역규모별로 답변 수준은 약간 차이가 있으나, 높은 확률로 외국인이 범죄를 초래할 것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황을 통해 실제 외국인의 범죄율은 심각하지 않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범죄 인식은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왔으며, 민족의 동질성을 지향해왔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다.

특히 범죄 관련 조사에서 이러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외국인의 실제 범죄율과 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범죄 인식은 다른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부정적 낙인을 가져오는 범죄 실태를 명확히 알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변화와 도전적인 상황은 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의 본격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에 대한 인식, 그 중에서도 외국인 범죄 관련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으키는 범죄가 실제적으로 많은지 확인하고, 시민들이 느낄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시 안전적 측면에서 논의하여 다문화 집단이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포용도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

3. 향후 논의 방향

우리나라는 K-culture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감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없는 경우 일부 산업은 유지가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결혼 확대로 인해 외국인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낯선 시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주민과 함께한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서구 국가에서는 개인이 이주민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고정관념, 적대감 등과 같은 부정적 태도에 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제도적 논의들이 폭넓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이념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참고문헌]

- 노성훈(2013). 외국인의 증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집단위협이론을 중심으로: 집단위협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51–184.
- 최동주(2016). 대인신뢰는 지역사회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만족도를 매개하는가?. 한국콘텐츠학회지, 14(3), 63–67.
- Blalock Jr, H. M.(1967). Status inconsistency, social mobility, status integration and structur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90–801.
- Hanslmaier, M.(2013). Crime, fear and subjective well-being: How victimization and street crime affect fear and life satisfaction.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10(5), 515–533.
- Stafford, M., Chandola, T., & Marmot, M.(2007). Association between fear of crime and mental health and physical functioning.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7(11), 2076–2081.

도시계획 정책 · 제도

Policy Report

인구감소 도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용지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 30일부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 반영 허용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11.28

- 앞으로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도 산업·주거·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11월 30일(목)부터 12월 20일(수)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도시의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등 3개로 구분

- (현행)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마련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도시를 성장형(인구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정체)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인구감소 도시는 발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 161개 중 77개가 최근 5년간 5% 이상 인구 감소(47.8%)

- (개선) 도시의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하고, 인구 추이를 감안하여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② 정책적 필요나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방식을 도입

- (현행) 토지수요 추정은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 확보는 불가능한 체계

- (개선)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에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 현재는 2차산업 종사자 수와 종업원 1인당 부지면적을 고려하여 공업용지 배분

-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하여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통계자료, 교통·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하고, 성장유도선* 등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

* 도시의 평면적 확산 방지하고, 특정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획선

③ 지자체가 수요를 감안하여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개발 수요 대응이 어려움
– (개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종량의 범위 내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개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④ 신기술을 도시기본계획에 도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도시기본계획(부산, 천안, 담양)에 시범 적용할 계획
* 인구 추정, 토지이용계획 수립, 생활권 설정 등에 실제 소비·통신·교통 빅데이터 활용

**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 / '22.4 ~ '26.12 / 192억원

| 승인·결정권자 | 시·도지사 |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 |
|---------|--------------------|---|
| 계획기간 | 20년 (5년 단위 재정비) | 10년 (5년 단위 재정비) |
| 계획의 범위 | 시·군 관할 구역 |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구역 |
| 계획내용 | | ①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 ② 공간구조·생활권 설정 및 인구분포, ③ 토지의 이용·개발, ④ 토지의 용도별 수요·공급, ⑤ 환경의 보전·관리, ⑥ 기반시설, ⑦ 공원·녹지, ⑧ 경관, ⑨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 ⑩ 방재·방범 등 안전 |

참고 국토계획법 상 도시·군계획

■ 도시·군계획의 정의

– 도시·군계획이란 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함(국토계획법 제2조제2호)

■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비교

| 구분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
| 개념도 | | |
| 계획목표 |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제시 |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 |
| 지위와 성격 |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비물적 종합계획 |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물적 계획 |
| 수립·입안권자 | 시장·군수 | 시장·군수 (주민제안 가능) |

지역자원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 지역에 활력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개발 우수사례 발굴·전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12.1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8일(금)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지역개발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개발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6건을 최종 선정함

*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

– 올해 경진대회는 관광 2개 분야(지역개발공모, 지역개발계획), 산업·주거복지 1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분야별로 최우수사례 1건과 우수사례 1건 총 6건을 선정함

■ 2023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우수 사례) 지역개발공모 분야는 사업 추진경과 및 사업효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이 – 지역개발계획 분야는 지역축제 및 청년 창업점포 공간 활용도가 우수한 예산군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이 – 산업·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이 각각 선정됨
– 한편, 우수사례로는, 청양군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지역개발

공모 분야), 보령시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지역개발계획 분야),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산업·주거복지 분야)이 차지함
 - 이번에 선정된 6개 지자체는 '24년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시 서면심사 면제(최우수), 가점 부여(우수) 등 혜택을 받게 됨
 *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소규모의 생활편의 시설 지원
 ■ 경진대회를 주관한 국토교통부 장순재 지역정책과장은 "지금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의 상생 협력이 필요할 때"라며,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힘

| | | | |
|--|-----------|-----------|---|
| | 최우수 복지 | 경북 경주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 KTX 고속철도 신경주역 일원에 경주시의 특성과 상징성을 내포한 복합기능의 신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문화관광, 교육업무 기능이 추가된 복합 도시로 개발) |
| | 우수 화순군 | 전남 화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 바다가 없는 화순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양식 수산물 생산 외 체험과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6차산업 모델로 개발 - 수산물을 활용한 가공·건강식품을 개발하여 내수면 양식단지조성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로 어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가능 |

참고1 2023년 지역개발사업 경진대회 선정 우수사례(6건)

| 분야 | 구분 | 지자체 | 사업명 및 주요 성과 |
|--------------------|------------------|-----|---|
| 관광 (지역개발 공모) | 최우수 전북 정읍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 - 지역 대표 브랜드인 "구절초"를 활용하여 기존 가을에서 사계절 정원으로의 확장과 체험시설 조성 등을 통해 다양한 방문수요층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계절정원과 캠핑장을 조성하여 10월 축제기간 외 사계절 관광지 조성 |
| | 우수 충남 청양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 - 천장호를 심으로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창출 - 천장호 출렁다리에서 단절된 수변산책로를 뷰티센터와 연계하는 텁방로를 조성하여 별빛축제, 조롱박 뷰티축제 등 주요 관광산업과 농촌마을 상생발전 도모 |
| 관광 (지역개발 계획) | 최우수 충남 예산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 - 편리하고 쾌적한 시장 및 휴식 공간 제공, 시장과 연계된 문화예술 공간과 축제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예산장터 삼국축제' 등 지역축제 시 축제 보조구역 및 주차장으로 적극 활용 |
| | 우수 충남 보령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js 컵 대회' 등 다양한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유소년 축구 꿈나무와 축구 동호인에게 사계절 훌륭한 스포츠 인프라로 활용 |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

- 20곳에 12,032억원 투입하여 쇠퇴지역 445만㎡ 재생, 약 9천 개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12.15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2.8~14. 서면)를 통해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힘
 - 이번 공모는 작년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①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②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③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해 실시

- ◆ (혁신지구)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
- ◆ (인정사업) 신속한 소규모 재생사업을 목적으로 활성화계획 수립없이 시행하는 점단위 사업
- ◆ (지역특화재생)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

- 총 49곳이 접수하였으며, 그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완성도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최종 20곳(혁신지구 1곳, 인정사업 3곳, 지역특화재생 16곳)을 선정

【'23년 하반기 신규사업 선정 결과】

| 구분 | 합계 | 부산 | 인천 | 광주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합계 | 20 | 2 | 1 | 1 | 1 | 2 | 2 | 2 | 1 | 3 | 1 | 1 | 2 | 1 |
| 혁신 지구 | 1 | | | 남구 | | | | | | | | | | |
| 인정 사업 | 3 | 남구 양천구 | 양천구 | 양천구 | 양천구 | 김포 | 양천구 | 양천구 | 양천구 | 군산 | 양천구 | 양천구 | 양천구 | 양천구 |
| 지역 특화재생 | 16 | 사상구 서구 | | 북구 | 연천 | 동해 평창 | 제천 괴산 | 태안 | 남원 장수 | 무안 | 청도 | 사천 의령 | 서구포 | |



- 특히,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및 일자리 창출, 대학-기업-지역 간 연계를 통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등 지역주도·민간참여 특화재생사업이 다수 선정되었고, 지구단위 개발사업인 혁신지구(광주 남구)를 통해 교통허브 구축 및 산학연 클러스터 등 지역 경제 거점도 조성될 예정
- 또한,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부처연계사업 포함 여부 외에도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가점을 부여

■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2,777억원, 지방비 2,107억원 등 총 12,032억원이 투입되어 쇠퇴지역 445만m²를 재생하게 됨

- 이를 통해, 생활밀착형 공동이용시설 36개, 창업지원공간 20개, 공공임대 등 신규주택 공급 및 노후주택 수리 등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약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

└ 특히, 어린이·노인 등 온 가족이 이용가능한 복합문화센터 등이 공동이용시설로서 각 지역에 공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와 건강·문화 증진 등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

- 한편, 이번에 선정된 신규사업지 20곳 중 17곳(85%)이 비수도권이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인구 50만 이하) 비중은 95%로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편리한 물류가 일상이 되고, 물류신산업의 도약을 위한 5개년 계획 세운다

-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3~'27) 확정
- 주문배송시설을 200개 이상 확충하고, 내륙물류기지 재정비 마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12.26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물류산업이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보다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3~'27)」을 수립하였다고 밝힘

- 동 종합계획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 연구, 물류업계·유관기관의 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3~'27)」은 “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원, 일자리 90만개, 부가가치 비중 46%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6대 추진 전략을 마련

- 아울러, 생활물류 급증에 대응하고 빠른 배송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을 200개 이상 확충하고, 운영기간이 도래하는 내륙물류기지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미래 교통수단과 연계한 물류시설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등 7대 핵심과제도 포함

- 주요 추진 전략 및 과제는 다음과 같음

전략 1. 생활밀착형 도시 물류 인프라 확충

- 주거지역으로 생필품을 즉시 배송하기 위한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심곳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 (주문배송시설) 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물류창고
- 도로·철도 유휴부지(고가하부, 휴게소, 차량기지 등)를 활용하여 생활 물류시설 설치를 확대
- 아울러, 공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주민센터 등에 물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해 주는 공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할 계획

전략 2. 노후화된 기존 물류시설 재정비·개선

- 운영기간이 도래하는 의왕ICD(*26)·군포IFT(*28)*의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외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방안과 현실화된 물동량을 반영한 개발·운영방안을 마련.
* ICD(Inland Container Depot, 내륙컨테이너기지), IFT(Integrated Freight Terminal 복합물류터미널)

- 낙후된 물류시설을 개선하여 주변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
- 또한, 기존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여객터미널 등을 활용하여 도심 물류시설을 복합화·고도화하여 주민친화시설로 재정비를 유도

전략 3. 지역 간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 기반 제공

- 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한 서비스 확대와 택배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소외지역 공동물류거점을 확대 설치하고,
- 소외지역 물류서비스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도서산간 지역의 경로당, 주민센터, 터미널 등 공공시설을 공동물류거점으로 활용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계획

- 급변하는 시장 여건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이 가능하도록 물류시설 실수요 검증과 수요 산정체계를 개선

전략 4. 물류시설의 스마트화

- 물류창고의 첨단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운 중소·영세 물류기업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 건립도 확대
- 연구개발(R&D)을 통해 생활물류 배송 전 과정을 친환경화·첨단화하고,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드론 등 신교통 수단과 연계한 물류인프라 제공 방안도 검토

전략 5.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

- 집적물류시설 등에 화물차용 수소·전기 충전소 구축을 확대하고, 철도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해 장대화물열차·피기백 등 신기술을 적용
- 실시간 위험물질운송 정보공유체계 마련,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등 물류산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여건도 마련

전략 6.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

- 공항·항만의 화물처리 시설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개선하고, 인천공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제3물류단지를 조성
- 아울러, 공항·항만 등 물류인프라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물류와 제조활동을 촉진하도록 국제물류거점 인근 복합 개발 추진도 검토
-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향후 5년간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해 미래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 간 격차 없는 보편적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항만을 국제 물류 허브로 육성하는 등 물류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힘
-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3~‘27)」전문은 12월 27일(수)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뉴스·소식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음

참고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비전 및 추진 전략



오래된 신도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 '23년 12월 2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주요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12.28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2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힘

■ '23년에는 1기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들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밀도 있게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

- '22년 9월 8일 「국토부장관 -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 '23년 2월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3월부터 6월까지 1기 신도시 5곳을 장관이 직접 찾아가서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 특별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

* 일산·산본 방문(23.3), 중동 방문(23.4), 분당 방문(23.5), 평촌 방문(23.6)

- 지자체와의 소통도 계을리하지 않았다. 특별법 발표 직후인 2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7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세미나」(국토연 주관)를 개최하여 기본방침, 특별법 등 그간 추진상황을 상세히 공유

- 특별법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대응하였다. 3월 24일 특별법 발의 후 5월 말부터 국토법안소위를 네 차례(5.30, 6.15, 9.13, 11.29) 개최하였으며, 소위원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에 지속 반영

- 11월에는 정부·여·야 모두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국토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쳐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 특별법 제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가 가능해 졌음

- 기존 법률과 달리 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순한 점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의 정비를 추진하여 기반시설 정비, 자족기능 확충 등 도시기능 향상이 가능도록 함

- 또한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 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도록 하였으며, 건축물 높이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으로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를 계획하도록 함

■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24년 주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

- 먼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기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할 계획

- LH, LX, 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할 계획. 지원기구는 '24년 중에 지정할 계획이며,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
- 마스터플랜을 조속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24년 중 공동 수립. 정부는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필요성,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지정할 계획.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정할 계획
- 국토교통부는 주요 후속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책 지원 과제들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

지방시대 이끌 성장거점 조성한다

- 11일부터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5개 광역시 선도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4.01.09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24.1.11.~24.2.20.)함
-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이며,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일(24.4.25.)에 맞춰 본격 추진됨
-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정함
-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또한,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

- 국토교통부 박정수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 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힘

참고

하위법령 제정(안) 세부 내용

①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

- 법에서 정한 사업 외 특구개발사업과 연계한 계획·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타법률 근거 사업종류* 규정
 - *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업 등 9개 사업과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 (기간·고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기간·고시사항 규정
 - * 자료제출 : 30일 이내 제출 → 협의요청 : 20일 이내 제출 → 도시개발위원회 심의·확정 → 지방시대위원회 보고 → 시·도지사등에 통보, 고시
- (의견제출) 의견제출 대상 시·도지사등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대도시 특례 대상이 되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장 포함
 -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대도시시장

③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 (지정·해제) 특구의 신청·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방법·절차를 규정
 - ↳ 기본계획 수록내용, 의견청취(주민열람, 공청회), 지정에 관한 고시, 절차 생략가능 경미한 변경의 범위 등
 - ↳ 특구의 지정해제 사유 및 해제에 따른 고시내용 규정
- (위원회심의) 법에서 정한 사항 외 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정에서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심의·의결 사항 및 심의 시 제출서류를 정함

④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시행

- (사업시행자)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공공기관* 시행자를 규정
 -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1개 공공기관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
- (실시계획)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경미한 변경 사항 규정
- (협의기구) 체계적·유기적 조성을 위한 사업협의체의 수행 업무와 총괄계획가의 권한 및 업무를 규정
- (공급·준공) 조성토지의 공급방법·절차·가격·원가산정기준, 준공인가 관련 제출서류, 대행기관, 공고 등 세부절차 규정

⑤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

- (적용사업) 법에서 정한 사항 외 지역 산업·경제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도심융합특구에 우선 검토 가능한 사업구역 규정
 - * 기회발전특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등 4개 구역 및 지자체가 요청하는 구역
- (지원·기관) 임시허가 및 실증 등 특례적용 법률* 및 지원기관** 규정
 - * 드론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 **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 기업종합지원센터 등
- (특례사항)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
 - * 주택공급특례 대상, 특례학교 추천방법 및 기준, 의료기관 시행가능 부대사업 종류, 국·공유재산 처분 특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및 가액결정 방법
- (시설설치) 지자체 등이 건설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설치범위 규정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 GTX-A 최초 개통, D·E·F 노선 임기 내 예타... 윤석열 정부
‘2기 GTX’ 본격화
- 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등 교통격차 해소
- 2층 광역버스 늘리고,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4.01.25

- 정부는 1월 25일(목)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
-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
-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나갈 계획

① 속도 혁신 :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24.3월 개통하고, 운정~

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

- └ 또한,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B노선 ’30년, C노선 ’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하여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엮

-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하여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

- └ A·B·C 노선 연장은 先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後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 └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

-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

- └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 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감

② 주거환경 혁신 :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
 - └ 우선,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 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 * 주요 내용(별첨자료 참고) : 1) 광역버스 차량 증편 및 기·종점 다양화, 2)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 3) 올림픽대로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계적 도입 등
 - └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

-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

- └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원)을 활용하여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

* 주요 지구 개선대책 32개 사업 약 7.4조원 집중 투자(나머지 3.6조원은 정상 투자)

└ 또한,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

└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하여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

③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 「철도지하화특별법」시행('24.1 공포, '25.1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
 └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24.12)하여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 또한,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감

-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

* ('20년) 11개국 12건, ('21년) 11개국 11건, ('22년) 9개국 10건, ('23년) 7개국 8건

■ 올해 사업공모는 ① 계획수립형, ② 해외실증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공모하고, 최대 8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

- “계획수립형” 사업은 지난해 10월 스마트도시국가위원회에 보고한 “K-city Network 사업 개편방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외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사업 제안서를 연중 접수받고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
 └ 올해 계획수립 지원대상은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업타당성이 검증된 사업 중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1건, 솔루션 계획 수립 1건을 선정해 각 3~6억원을 지원
 - “해외실증형” 사업의 경우 올해는 기업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에서 상용화된 다양한 솔루션이 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외실증 사업을 6건으로 확대하고 건당 2~4억원을 지원할 계획

■ '24년도 K-City Network 사업은 1월 30일 공고되며 계획수립형 사업은 사업 제안서를 연중 접수하나 '24년도 지원사업은 4월까지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검토하고, 5월 이후 접수되는 사업은 '25년도 지원사업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반면, 해외실증형 사업은 공모 마감기간인 3월 19일까지만 사업계획을 접수

- “계획수립형” 사업은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가 사무국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면 KIND가 사전컨설팅을 시행해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고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 “해외실증형” 사업은 사무국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우리 기업으로부터 해외실증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사업 추진 여건 및 후속 수출 가능성 등을 종합으로 평가하여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
 -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에서 1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음

한국의 스마트도시 모델, 글로벌 해법이 되다

- 30일부터 K-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사업 공모… 총 8곳 선정 4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4.01.3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해외 국가와 스마트시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사업(이하 “K-city Network”)」의 공모를 1월 30일부터 시작

- '20년부터 시작된 K-City Network는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하여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려는 해외 도시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고, 국내 개발된 스마트 솔루션의 현지 실증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23개국에서 41개 협력 사업을 진행

참고 K-City Network 개요

■ (개념)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도시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 및 개발, 기술전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20~)
 - (계획수립형) 해외 정부가 사업을 신청하면, 한국에서 ①스마트 도시

계획수립 또는 ②스마트 솔루션(교통·에너지·안전 등) 계획수립 지원

- (해외실증형) 우리 기업과 해외협력기관이 사업을 신청하면,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시티 기술을 해외도시에 직접 적용·실증 지원

| 구분 | ① 계획수립형 | ② 해외실증형 |
|---------------|------------------------------|--------------------------|
| 지원규모 (곳 당) | 2곳 선정(3~6억) | 6곳 선정(2~4억) |
| 지원대상 | ①스마트도시 계획수립 ②스마트 솔루션 계획수립 | 국내에서 개발 및 상용화된 솔루션 해외 실증 |
| 지원유형 | 기본구상, MP, F/S 등 | 시범 실증사업 |

- (지원 국가) '20년~'23년까지 23개국, 41개 사업 추진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
- 11개 법령·행정규칙 모두 단축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후속 입법 속도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4.01.3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1.31~2.29, 입법예고) // 「오피스텔 건축기준」,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

주택 업무처리지침」(1.31~2.13, 행정예고)

-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
 - ↳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되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착수를 의무화하여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하고자 함
- 아울러,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주요내용

[입법예고 사항]

- ❶ 「도시정비법 시행령」: 정비사업 규제 개선
 -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
 - 현재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하는 한편,
 -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체가 동의해야 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 개정안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하는 한편,
 -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도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됨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사업추진 요건 완화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
 - 현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이 4m 이상(사업면적 1~4만m²)일 경우 6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
 - 이로 인해 사업 대상지가 제한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경우에는 도로 인접부지 활용성이 낮아지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음
- 개정안은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을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경우에는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하여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가능토록 개선
 - 이를 통해 사업대상지가 늘어나고, 도로 인접부지의 활용여건이 높아지는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③ 「주택법 시행령」: 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 폐지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
 -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전용면적 60m² 이하)은 방 설치가 제한되어, 청년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었음
 - ㄴ 전용면적 30m²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30m² 이상 60m² 이하인 경우 전체 세대의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 구성해야만 하는 상황

-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다양한 공간구성을 허용
 - 전용면적 30m² 미만이어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60m² 이하인 모든 세대에 방을 설치하는 것 등이 가능
 - 이를 통해 도심 내 다양한 공간구성을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도생주 주차장 기준 완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

터 2.29.까지 29일간 실시

-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장 기준을 완화(세대당 0.7→0.6대)하고, 공유차량 주차면수 20% 확보 시 0.4대까지 완화 적용하고 있으나, 공유차량 주차장 설치에 따른 완화 효과가 크지 않고, 다세대·연립주택에는 해당 완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

-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용 주차면수 1개 당 일반차량 주차면수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완화 실효성을 높이고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 적용
 - 이를 통해 소형 주택의 경우 공유차량 주차장 50% 확보 시 세대당 주차대수가 0.26대로 절반 이상 완화되는 만큼,
 - 도심 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부지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⑤ 「국토계획법 시행령」: 입지규제 및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
 - 현재 중심상업지역*에서 주택은 주거 외 업무, 상업 등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물에 한해서만 건축할 수 있으며,
 - *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하나로 해당 도시의 상업·업무기능의 중심지로 도시 내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지정
 -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한 용적률 기준으로 최대 1.2배까지로 완화가 제한

-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중심상업지역에서 주택 단일건물로도 입지를 허용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지원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범위를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확대
 - 이를 통해 도심 내 도시형 생활주택 및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어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⑥ -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매입임대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
 - 현재 전용면적 30m² 미만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주차장 기준을 완화(

세대당 0.5→0.3대)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적용하지 않는 문제 가 있었음

- 개정안은 역세권 1km 이내 건설되는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요건을 정하는 신축매입약정 주택(30m² 미만)은 0.3대를 의무 적용
-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신축매입약정 주택(30m² 미만)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해당 전용주차면수 1개당 일반차량 주차면수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아, 공유차량 주차장 50% 확보 시 세대 당 주차대수가 대폭 완화(0.3→0.13대)되는 효과가 있음
- 이를 통해 역세권 인근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부지에도 청년 등 1인 가구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⑥-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신도시 사업 재원 다각화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 까지 29일간 실시
-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주택공사 이외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만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기관 참여에 한계가 있었음

-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추가하여,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신도시 사업 재원을 다각화하여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⑦·⑧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임대관리업체 의무 강화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 1.31.부터 2.29. 까지 29일간 실시
- 현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이 유사 업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임대인·임차인은 임대관리업체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
- 또한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체의 지자체 신고항목이 세분화 되지 않고, 현재 제출하는 서류로는 지자체가 비정상계약을 단속하는 등 관리 가 어려운 상황
- 개정안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1.5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업체의 보증가입 여부를 안심

전세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분기별 현황신고 항목도 임대인, 주택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현황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에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토록 하는 등 서류 목록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지자체의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주택임대관리업체에 의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해 임차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행정예고 사항]

❶ 「오피스텔 건축기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24.1.31.부터 2.13. 까지 13일간 실시
-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내·외부의 완충공간인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청년층이 원하는 주거여건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개정안은 그간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금지하였던 규제를 폐지하여, 발코니 설치를 허용
- 이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거 여건이 보다 쾌적해짐에 따라 수요도 증가하게 되어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보임

❷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피해주택 협의 매수

-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24.1.31.부터 2.13. 까지 13일간 실시
- 현재 시행 중인 경·공매 매입(우선매수권 양도)은 경·공매 진행에 장기간 (1~2년)이 소요되어 임차인들의 신속한 구제가 어려운 상황

- 개정안은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감정가로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보상절차 조기착수 의무화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24.1.31.부터 2.13. 까지 13일간 실시
- 현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할 때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나, 착수시기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 여건에 따라 일부 지구에서 보상절차가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 사유재산권이 제한됨에 따른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

-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를 120일 이내 착수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장조사 착수 전에 공공주택지구 지정권자에게 보상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개선
 - 이를 통해 공공주택지구 보상절차 착수시기가 앞당겨짐으로써 택지 공급속도가 빨라지고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리청에서 토지매수 업무를 처리할

-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노후 주택·근생시설 신축) GB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훼손, 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진입로 설치범위 확대) 집단취락으로 GB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 건축된 주택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GB 내 토지에 진입로 설치 허용
 - * GB 내 진입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설시설 설치도로 확대)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를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광역시도 등을 포함한 도로로 확대
 - * (현행) 일반국도, 지방도 → (개선)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및 지방도
- (부대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음식점 부지와 맞닿은 토지가 아닌 폭 12m 미만의 도로, 도량, 소하천 등으로 분리되는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를 일부 허용
 - * 해당 시설과의 연결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치 않고 지자체장이 토지와 해당 시설을 일체로서 인정하는 경우로, 300㎡ 이하의 주차장(건축물식 주차장은 제외)
- (농업인용 간이화장실 허용) GB 내 농지*에 농업인이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신고행위로 허용
 -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경우는 제외
- (토지매수 업무 위임) 법률 개정에 따라 당초 LH에 위탁했던 GB 토지 매수 관련 업무*를 지방국토청에 위임(LH위탁규정 삭제)

* 매수청구서 접수, 매수대상여부 통보, 감정평가 비용 청구(철회시), 매수가격 통보 등

비를 지원(지원률 50%)받게 됨

인천·충남 등 5곳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

- 물류취약지역의 물류 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

총 41억 국비 지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4.02.15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물류취약지역 주민 편의증진 등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물류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24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대상지를 선정
-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
- '24년 실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두 달간(23.11~'24.1) 공모를 시행하였으며, 총 10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해 사업 내용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
- *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추진의지, 발전방향성 등을 종합평가(서면 + 발표평가)

<최종 선정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사업내용 |
|--------|--|
| 인천광역시 | • 사회적 초격차 해소를 위한 수요대응형 스마트 적재관리 시스템 |
| 충남 서산시 | • 서산시 스마트시티 조성 기반 물류(드론) 인프라 조성 |
| 부산광역시 | • 찾아가는 저온창고 공유서비스 실증·확산 지원 |
| 서울특별시 | • 도시철도 인프라 활용 물품보관·배송 서비스 구축 실증 |
| 경북 김천시 | • 아파트 택배갈등 해결을 위한 생활물류 상생플랫폼 |

- 선정된 지자체는 신청 사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지역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사업당 5~16억원(평균 8억원)의 국

■ 국토교통부는 '21년부터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택배·소상공인 공동물류 체계 실증,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무인운송 실증(성공률 드론 95.7%, 로봇 99.6%)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실증 기회를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물류체계 전환 기반을 조성해 왔음

-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시행되면 화물차 적재효율 개선·통행거리 단축, 물류취약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지자체, 물류기업 등 참여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

-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과장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혁신 기술이 활성화되면 물류취약지역의 물류문제 개선, 물류 서비스 수준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 "선정 이후에도 지자체, 사업 참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수한 선도사례를 발굴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24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선정사업 개요

①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는 디지털 센서기술과 필요에 따라 차량 적재함을 자유롭게 구분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하나의 화물차량 적재공간에 생활물류, 원재료, 서비스 자재 등 다양한 짐을 함께 운송함으로써 도심의 물류효율을 높이고 배송기간도 단축할 계획



② 충남 서산시

- 충남 서산시는 서산시가 보유한 드론 인프라를 활용해 생활물류에 취약한 고파도, 분점도, 우도 등 유인 도서지역을 순환하는 드론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섬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친환경 물류체계로 전환해 나갈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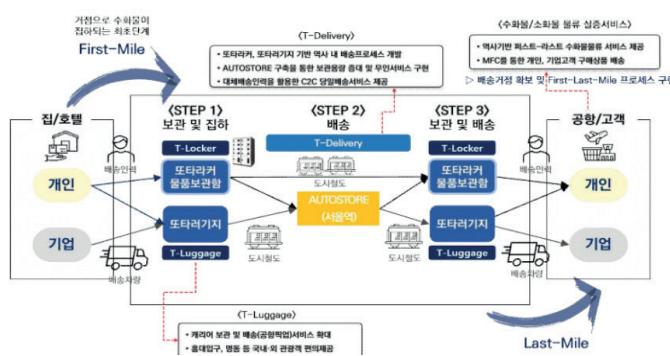
③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는 저온보관창고 공유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저온보관이 필요한 기간동안 창고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농수산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각종 농산물의 제철 출하시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④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는 개인과 기업의 수화물을 도시철도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퍼스트-라스트마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고, 우선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 여행 캐리어 보관·배송 서비스부터 시작해 생활물류 서비스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



⑤ 경북 김천시

- 경북 김천시는 시가 보유한 공영주차장을 기반으로 지역의 거점 생활 물류 공용센터를 구축하고, 시민공유형 화물 전기자전거를 활용해 주민이 스스로 배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아파트 백배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

관련 법령 제·개정

대중교통 용이한 지역의 정비구역 용적률 완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1. 19.] [대통령령 제33908호, 2023. 12.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560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이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신탁업자가 정비구역의 토지를 신탁받지 않고도 토지등소유자의 추천 등을 받으면 지정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 건설·공급비율 완화(제1조의2 제1항 신설)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비율을 종전에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함.

나.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요건(제11조의2 신설)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제47조의2 신설)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중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보다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종전에는 주거 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준공업지역까지로 확대함.

라.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요건 등(제5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정비구역이 철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도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거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건설·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함.

마.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 요건(제80조의4)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 및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정비 사업 시행 예정시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함.

| 종전 | 일부개정 |
|--|--|
| 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라 건설·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비율은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 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2)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 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

| |
|---|
|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 |
| ②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라 건설·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비율은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

| | |
|------|--|
| 〈신설〉 | 제11조의2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서 “천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지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 이하생략 – |
|------|--|

| | |
|--|---|
|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50퍼센트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이하생략 – 〈2~6항 추가〉 |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50퍼센트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이하생략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1.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 이하생략 – |
|--|---|

| | |
|------|---|
| 〈신설〉 | 제47조의2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법 제5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제3호나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
| 〈신설〉 | 제80조의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⑥ 법 제101조의5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

〈법제처 제공〉

재정비촉진사업 범위 및 지정요건 완화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4. 27.] [법률 제19849호, 2023. 12.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에 소규모재개발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추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면적요건을 완화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및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과밀부담금 외에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증전 | 일부개정 |
|---|---|
|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
| ③ 제5조에 따라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제곱미터 이상, 고밀복합형의 경우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등으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제5조에 따라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등으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법제처 제공〉

| 증전 | 일부개정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
|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 |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 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 | 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
| |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생활권계획 제도화, 공간재구조화 계획 도입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인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용·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함으로써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한편,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하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종전 | 일부개정 | 종전 | 일부개정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신 설〉 | 제35조의5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 이하생략 – |
| 3. “도시 · 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 3. “도시 · 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 군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 〈신 설〉 | 제35조의6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 이하생략 – |
| 4. “도시 · 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4. “도시 · 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신 설〉 | 제35조의7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 – 이하생략 – |
| 〈신 설〉 | 5의4. “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 제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삭 제〉 |
| 〈신 설〉 | 5의5.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신 설〉 | 제40조의3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 이하생략 – |
| 〈신 설〉 | 5의6. “복합용도계획”이란 주거 · 상업 · 산업 · 교육 · 문화 · 의료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비율 및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신 설〉 | 제40조의4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 이하생략 – |
| 〈신 설〉 | 제35조의2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 이하생략 – | 〈신 설〉 | 제40조의5 (도시 · 군계획시설입체 복합구역의 지정) – 이하생략 – |
| 〈신 설〉 | 제35조의3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 이하생략 – | 〈신 설〉 | 제40조의6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 이하생략 – |
| 〈신 설〉 | 제35조의4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 이하생략 – | ■ 부칙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 결정된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으로 지정되거나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 결정된 것으로 보는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 |
| | | 〈법제처 제공〉 | |

질의응답사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023.12.04.

질의내용

도시정비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운영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군수등이 같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건축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아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과 관련된 운영기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43호)을 말하며, 이하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이라 함)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가.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등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먼저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같은 법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규정(제15조제1항)하면서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한 절차 및 방법(각주: 사업계획의 승인(제15조), 착공신고(제16조제2항), 사업계획의 통합심의(제18조), 대지의 소유권 확보(제21조부터 제27조 까지), 주택의 설계 및 시공(제38조), 주택의 감리(제43조부터 제45조) 및 주택의 사용검사(제49조) 등)을 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에서

는 그 규율대상인 “정비사업”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규정(제2조제2호)하면서, 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각주: 정비기본계획(제4조)의 수립,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제16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제31조), 조합설립인가(제35조), 사업시행계획인가(제50조), 분양 공고 및 분양신청(제72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제74조),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제81조) 등)을 「주택법」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다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의 근거 법령, 사업 주체, 사업계획(사업시행 계획)의 승인(인가), 사업부지 매입 요건 등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업방식으로서 각 사업의 근거 법령상 요구되는 요건을 각각 갖춘 경우라면 양자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6. 10. 13. 회신 16-0420해석례 참조)이나, 어느 하나의 사업방식을 선택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시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 「주택법」 제17조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각주: 2015. 7. 10. 의안번호 1916050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 도시정비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목적(각주: 2016. 8. 18. 의안번호 2002459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전부개정별법안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제51조)하고 있으며, 시장·군수등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받은 경우 「주택법」 제17조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때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해서는 「주택법」 제17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원칙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시 기부채납 수준 등

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때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시장·군수등은 반드시 그 기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 한편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군수등이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제받기 위하여 제출 받은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때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허가 의제 제도는 하나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각주: 법제처 2021. 12. 29. 회신 21-0795 해석례 참조)인데, 인·허가 의제가 된다는 이유로 그 의제 되는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된다고 하여 재건축사업 외에 별도의 주택건설사업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특히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51조에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마. 아울러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6년 8월 2일 시행된 「주택법」 제17조에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76호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년 2월 9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제51조를 신설하여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둔 것은 같은 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게 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운영기준이 고시되지는 않았으나,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624호) 제4장제5절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부담의 원칙을 규정하여 정비계획 수립권자(각주: 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의미함.)에게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2023.11.01.

질의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함)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각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으로서, 박물관은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7호사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었다가, 같은 영이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 당시 같은 영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 사안의 박물관은 대통령령 제21670호 개정 전 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같은 영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박물관임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대한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가.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대한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행위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취락지구로의 이축'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기존 건축물'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대한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은 그 이축에 대한 행위허가 당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을 의미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본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단서)으로서, 같은 항 제2호는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 지정된 취락지구 안으로 그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것(각주: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0755 판결례 참조)이므로, 이러한 예외사유를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각주: 법제처 2020. 3. 4. 회신 19-0709 해석례 및 법제처 2016. 3. 25. 회신 15-0694 해석례 참조)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호에서 행위허가를 받아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명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

해 이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대한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와 규정체계에 부합합니다.

라.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는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의 안정적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라도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각주: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제5호의 건축물[동식물 관련 시설,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주민 공동이용 시설, 공중화장실,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을 말함.)인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각주: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917 판결례 및 2016. 11. 2. 의안번호 제2003222호로 발의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박물관은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임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건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경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자목 등 관련)

법제처 2024.02.19.

질의내용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각주: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

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전제함.)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은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됩니다.

나. 먼저 「경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자목에서는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및”이란 “그리고”, “그 밖에”, “또”와 같은 뜻으로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부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같은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은 각각 독자적인 사업계획의 검토·심의·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고시되는 사업으로서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바(각주: 법제처 2016. 8. 18. 회신 16-0354 해석례 참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이라는 문언은 같은 조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한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및”으로 연결하여 두 사업 모두를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지, 그 문언과 달리 이를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더욱이 「경관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국토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경관 심의를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관 심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한 것(각주: 법제

처 2015. 10. 20. 회신 15-0500 해석례 및 2012. 10. 18. 의안번호 제 1902228호로 발의된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로 규정된 각각의 “개발사업”은 모두 경관 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 이 「경관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 한편 「경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경관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인공 요소인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만을 시행하는 경우는 경관 심의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관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서는 경관 심의의 대상을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경관 심의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전의 개별 시설물 단위의 단편적인 경관 심의에서 벗어나 국토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중요 건축물에 대하여 각각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공공 공간에서의 종합적인 경관 검토를 제고하려는 취지로서, 같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른 각각의 경관 심의 대상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각주: 법제처 2021. 8. 2. 회신 21-0351 해석례 참조), 「경관법」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 등의 위임에 따른 「경관 심의 운영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57호)에서는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제3장)와 건축물의 경관 심의(제4장)를 구별하여 규정하면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간의 골격 설정 및 각 공간별 계획방향,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스카이라인 등의 계획방향, 야간경관, 색채,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의 계획방향 등을 경관 심의 기준(제3장제3절)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규모, 형태, 입면 등 계획, 지형에 따른 배치 계획, 인접 가로 특성에 적합한 외부공간 계획 등을 경관 심의 기준(제4장제2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와 건축물의 경관 심의는 그 심의 사항과 심의 기준이 구별된다(각주: 법제처 2021. 12. 7. 회신 21-0641 해석례 참조)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협회 소식 · 동정

한국도시계획가협회 2024년 신년회 개최

2024. 1. 5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1월 5일 오후 6시에 협회 사무실에 2024년 신년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신년회에는 김홍배 회장, 선권수 감사, 이승일 교육부회장, 서원석 상임이사, 이근수 상임이사, 조종렬 상임이사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신년회에서는 김홍배 회장의 인사말 이후에 2024년 신년 기념 케이크 커팅식을 가졌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이 서로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대전 · 세종 · 충청지회 간담회 개최

2024. 1. 19

우리 협회 대전 · 세종 · 충청지회에서는 지난 1월 19일 정오에 더원ENG 천안사무실에서 대전 · 세종 · 충청지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성길 지회장 등 약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충청지회 지향점, 도시계획업 제고에 대한 논의, 학생 진로 및 인력수급 문제,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한국도시계획가협회 2024년 제1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합동회의 개최

2024. 2. 16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2월 16일 오후 7시에 협회 사무실과 줌을 통하여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합동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협회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현황과 충청지회 창립기념세미나 개최, 2024년 신년회 개최, 2024년 1차 장학위원회 개최, 2024년 1차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등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 상반기 협회 일정에 대해 논의한 후, 2023년 예산 및 사업 결산과 2024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을 의결하였으며, 장학위원회의 장학생 선정 및 우수졸업생 선정 결과를 의결하였으며, 충청지회 창립을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한국도시계획가협회 2024년 정기총회 개최

2024. 2. 23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2월 23일 오후 5시에 러닝뱅크 송파교육센터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인토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후 협회 발전에 이바지하신 분들을 위한 감사패 수여와 우수위원회에 대한 표창장 시상이 있었습니다.

시상 후에는 2024년 협회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현황과 충청지회 창립기념세미나 개최, 2024년 신년회 개최, 2024년 1차 장학위원회 개최, 2024년 1차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대전, 세종, 충청지회 간담회 개최 등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예산 및 사업 결산과 2024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을 의결하였으며, 대전, 세종, 충청지회 창립을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협회 회장선거 결과 발표에서는 이승일 후보가 협회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소개

한국도시계획가 협회란?

-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도시문화 창조에 기여하고 미래도시계획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계획가들에 의해 결성된 단체다.
- 기존의 도시계획 단체들이 학술, 기술능력 배양 등 분야별로 목적 단체였던 것에 반해 “도시계획가협회”는 도시계획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 “계획가”들의 모임으로 사람 그 자체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 특히 도시계획분야가 경제, 사회, 인문 등 문화 전반과의 상호 연계를 통해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기술, 학술, 공공분야, 산업 분야를 막론하여 구성된 도시계획분야 최초의 통합 단체이다.

협회의 목적

도시계획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고, 도시계획가의 윤리강화 및 품위 보전과 권익을 보호하며, 도시문화와 전통을 발굴하여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시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및 품격높은 국토공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회의 구성



협회의 사업

- 협회는 도시계획분야 전반의 상생협력과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분야를 정관에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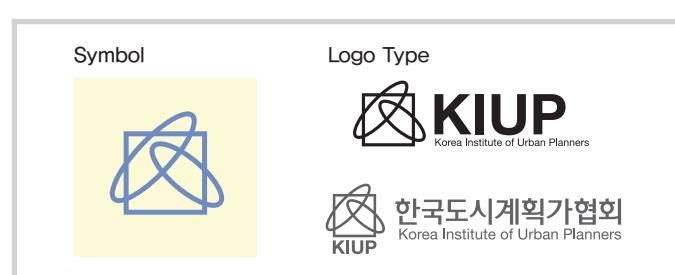
〈정관상의 사업범위〉

- 도시계획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
- 도시계획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 연구
- 도시의 전통과 새로운 도시문화의 연구
- 회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 도시계획가에 대한 도시계획 업무의 경력 관리
- 도시계획 및 그 관련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시상
- 기타 협회 목적달성을 필요한 사업

- 협회는 정관상의 사업범위의 실천을 위해 매년 사업계획 수립시
 - 대국민 이해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의 홍보
 - 기술발전과 정책심화를 위한 지속적인 세미나, 대외 교육
 - 타분야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도시계획 발전
 - 도시계획가들의 윤리강화를 기반으로 실력증진, 권익 보호 등의 사업을 연차별로 중점 관리하고 있다.
- 협회의 모든 사업은 회원들의 우선 참여가 가능하며 도시계획에 관심있는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있다.

협회 홈페이지 운영 _ www.kiup.org

- 홈페이지는 도시계획분야 홍보와 회원참여에 중점을 두고 협회 소개, 회원, 위원회, 참여신청, 자료소개, 게시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협회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2014년 2월 홈페이지 개설이후 실질적인 도시계획교류의 장으로서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신규 가입회원 명단

2024년 4월 2일

NEW
MEMBERS LIST



개인회원

- 고혜리 (주)도화엔지니어링 도시단지1부 부장
- 김대욱 (주)슈타트 대표
- 김명래 브니엘네이처(주) 도시계획실 실장
- 김영훈 (주)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김예성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 김정후 김정후도시정책연구소 대표
- 김현경 수원시청
- 류경무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 박채운 국회사무처 정책실장
- 방성훈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 신 담 엔에이치스마트시티개발주식회사 개발이사
- 원종호 홍익대학교 교수
- 윤 미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팀장
- 윤혁경 A&U 건축사사무소 대표
- 이명주 명지대학교 교수
- 임대성 (주)정우엔지니어링 부회장
- 장남종 동해기술공사 부사장
- 정선아 (주)신영이에스디 과장
- 정성기 한국토지신탁 총괄자문역
- 조진우 (주)한울이엔씨 부장
- 최홍근 (주)예건기술 대표
- 한성수 안양시청 팀장
- 홍선기 SH공사 도시정비사업본부장
- 홍성용 건축사사무소 NCS lab 소장



단체회원

과천도시공사



종신회원

- 김권일 (주)인토엔지니어링 도시건축사사무소 이사(본부장)
- 김홍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 윤진성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 윤창완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사)한국도시계획가협회 회비 납부

우리 협회에서는 협회 회원의 권익 보호 등 협회의 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원님들께 회비 납부를 요청드리고 있으며,
협회 회원님께서는 아래의 계좌번호로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정회원 | 준회원 |
|---|---|
| 50,000원 (매년 3월 1일~익년 2월 말일 중 납부시 정회원 자격 유지) | 20,000원 (매년 3월 1일~익년 2월 말일 중 납부시 준회원 자격 유지) |
| 정회원 | 준회원 |
| 신한 100-030-115784 사단법인한국도시계획가협회 | |
| 종신회원 | 납부계좌 |
| 500,000원 | 신한 100-029-876180 사단법인한국도시계획가협회 |

※ 임원의 경우 회비납부 관련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02-2291-4333)

회원동정 제보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회원 동정을 싣고 있습니다.
영전, 직위변동, 직장이동, 수상, 인터뷰, 관훈상제 등 회원님께서 협회 회원님들과 공유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협회 사무국(kiup@kiup.org)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주)스페이싱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에서는
협회지 Urban Planners 2024년 4월호 발간과 관련하여 후원하였습니다.”

제6대
사단
법인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출범을
경축합니다



도시전략연구소 대표 선 권 수
(strategy·management·consulting·developer)

Since 1966

YOOSHIN

유신은 인류의 안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업입니다

사업 개발부터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고객의 요구 그 이상을 넘어
공동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Link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교통과 수송
도로/철도/교량/공항/항만/터
널



Basis

우리 삶에 기반이
되는 물과 땅
수자원 / 상하수도 / 지반



Harmony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사람과 자연의 조화
도시·단지 / 레저·조경



Eternity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성 있는 에너지원 개발
신·재생 파워 / 에코시스템 / 환경



창립년도
1966년



404명



9,851건



66개국



1953 - 1965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맞닿은 출발



1981 - 2000
세계를 무대로 한 도전과
끊임없는 노력



2011 - 현재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하지 않는 신뢰



YOOSHIN

| | | | | | | | |
|---------|-----|-------------------------|-------|-----------------------|-------------------------|----------------------------|--|
| 회장 | 이승일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 | | | |
| 기획부회장 | 김선아 | (주)스페이싱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 | 공공부회장 | 조종렬 | (주)대한콘설탄트 부사장 | | |
| 행정부회장 | 선권수 | 도시전략연구소 대표 | 산학부회장 | 임영진 | 삼호기술공사 대표이사 | | |
| 재정부회장 | 문천재 | 주식회사 유신 / 국토부문장 사장 | 여성부회장 | 유명소 | (주)동림P&D 부사장 | | |
| 교육부회장 | 김성길 | 공주대학교 교수 | 연구부회장 | 윤정중 | LHRI 선임연구위원 | | |
| 대외협력부회장 | 이명훈 | 한양대학교 교수 | 기술부회장 | 김동근 | NA공사 처장 | | |
| | | | 감사 | 백복수 | (주)인토엔지니어링 도시건축사사무소 부대표 | | |
| | | | | 한상훈 | 중원대학교 교수 | | |
| 상임이사 | 강경훈 | 이룸CNS 대표 | 윤진성 |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 장성만 | 목포대학교 교수 | |
| | 권용일 |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 운혁경 | A&U 건축사사무소 대표 | 장호순 | (주)미래E&D 부대표 | |
| | 권혁도 | 동명기술공단 상무 | 이경주 |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전경희 | 도시경영연구소 소장 | |
| | 김성률 | 우리이엔지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이근수 | 과천도시공사 사장 | 전호근 | (주)홍익기술단 부사장 | |
| | 김영준 | 청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이명주 | 명지대학교 교수 | 정현철 | (주)삼호기술공사 부사장 | |
| | 김정곤 | (주)베타랩 도시환경연구소 소장 | 이상우 | LH공사 처장 | 조우현 | GH공사 본부장 | |
| | 김주영 | 상지대학교 교수 | 이영성 | 서울대학교 교수 | 최민성 | 델코컨설팅그룹 대표 | |
| | 김충호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이일희 | 제일엔지니어링 이사 | 최상희 | LHRI 선임연구위원 | |
| | 서원석 | 중앙대학교 교수 | 이자용 | LH 토지주택대학교 정교수 | 최승희 | 우석대학교 교수 | |
| | 안영수 |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 이창연 | 중앙대학교 교수 | 최총근 | (주)예건기술 대표 | |
| | 여옥경 |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이창효 | 한밭대학교 교수 | 홍길표 | (주)서영 부사장 | |
| | 윤갑식 | 동아대학교 교수 | 임동일 |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홍성덕 | (주)동성엔지니어링 사장 | |
| | 윤상복 | 동의대학교 교수 | 임택규 | (주)신화이엔씨 대표이사 | 황지욱 | 전북대학교 교수 | |
| 이사 | 강동오 | GS건설 디벨로퍼사업담당 상무 | 박인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이철성 | (주)건화 부사장 | |
| | 강석형 | 사람공간연구소 그룹장 | 박채운 | 국회 사무처 정책실장 | 이현경 | 동의대학교 교수 | |
| | 강원준 |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 박철광 | 한화건설 개발사업본부 전략사업담당 상무 | 임대성 | (주)정우엔지니어링 부회장 | |
| | 강평희 | (주)대한콘설탄트 이사 | 박철홍 | (주)건화 도시계획부 전무 | 임옥근 | (주)상원 대표이사 | |
| | 고준호 | 한양대학교 교수 | 백대현 | 새만금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개발사업처장 | 임현진 | 더 도시연구소 대표 | |
| | 고진수 | 광운대학교 교수 | 백한열 | 한남대학교 교수 | 임현빈 |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
| | 고태호 |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 성정환 | LH 토지주택연구원 실장 | 장남종 | 동해기술공사 부사장 | |
| | 구용호 | (주)해동기술개발공사 대표이사 | 성진욱 |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 장영호 | (주)미래E&D 도시설계본부장 | |
| | 권영선 |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성현곤 | 한양대학교 교수 | 장윤정 |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 |
| | 권일 |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소효근 | (주)컬리넌홀딩스 대표 | 전병선 | 한국철도공사 용산사업단 용산개발처 단지계획부부장 | |
| | 김권일 | (주)인토엔지니어링 도시건축사사무소 본부장 | 송향숙 | 여성과 공간연구소 소장 | 전병혜 |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
| | 김근영 | 강남대학교 교수 | 송홍수 | (주)청림이엔씨 대표이사 | 정다운 | (주)OCS도시건축 실장 | |
| | 김기중 | S+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 신상영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정명화 | (주)유신 전무 | |
| | 김동준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양성돈 | 경기연구원 시군연구센터 연구위원 | 조미정 | 한양대학교 교수 | |
| | 김병곤 | (사)제주교통연구소 감사 | 양용택 |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 | 조정훈 | 하나로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사 | |
| | 김선웅 |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 | 오명택 |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 조필규 |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 |
| | 김용태 | (주)한진개발공사 전무이사 | 오복화 | (전)의왕시청 경제환경국장 | 조필제 |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본부장 | |
| | 김윤희 | 인천광역시 팀장 | 우명제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지구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
| | 김재구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원종호 | 홍익대학교 교수 | 진영길 | (주)서영엔지니어링 건설관리부 부사장, 본부장 | |
| | 김정후 | 김정후도시정책연구소 대표 | 유천용 | (주)엠와이이엔씨 대표 | 천상현 | 홍익대학교 교수 | |
| | 김정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윤문상 | 주식회사 유신 부사장 | 최봉분 | 목원대학교 교수 | |
| | 김진유 | 경기대학교 교수 | 윤영담 | (주)에스파트너스 CCO | 최성택 |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 |
| | 김태윤 | (주)동아이엔지 대표 | 윤은정 | 서울특별시청 주택정책실 건축주택정보팀장 | 최준영 |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센터장) | |
| | 김호용 | 동아대학교 교수 | 윤정란 |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최지환 | (주)인토엔지니어링 도시건축사사무소 본부장 | |
| | 김황배 | 남서울대학교 교수 | 이남휘 | 작은도시대장간 실장 | 최창규 | 한양대학교 교수 | |
| | 김효진 | 포천도시공사 개발사업단장 | 이동우 | 주식회사 맵인어스 수석연구원 | 탁정호 | 파앤티 글로벌 대표이사 | |
| | 남광우 | 경성대학교 교수 | 이상훈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한재범 | 법무법인 제이엔 변호사 | |
| | 노혜진 | 케이에스엠기술(주) 도시계획부 상무 | 이성로 | (주)신명건설기증공사 부사장 | 현동호 | (주)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 부사장 | |
| | 문계정 | 법무법인 서평 일산 분사사무소 변호사 | 이용각 | (주)대우건설 상무 | 홍국정 | (주)하우원 대표 | |
| | 문채 | 성결대학교 교수 | 이우배 | 인제대학교 교수 | 홍선기 | SH공사 도시정비사업본부장 | |
| | 민세식 | (주)민종합기술단 대표이사 | 이윤홍 |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 | 홍성용 | 건축사사무소 NCS lab 소장 | |
| | 박근오 | 강남대학교 교수 | 이재경 |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조교수 | 홍재주 | 주식회사 맵인어스 이사 | |
| | 박신태 | (주)중원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이재우 | 목원대학교 교수 | 황중만 | 한양대학교 교수 | |
| | 박영길 | 이천시 도시재생센터 센터장 | 이정하 | 상지엔지니어링(주) 상무 | | | |



한국도시계획가협회
URBAN PLANNERS

- 2024. 04. 도시와 안전
 - 01. 도시정책 동향 및 전망
- 2023. 10. 도시계획과 대기
 - 07. 지속 가능한 도시와 환경
 - 04. 국토도시계획과 도시교통
 - 01.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 2022. 07. 민선 8기 지방시대의 새로운 도시비전과 전략
 - 04. 새 정부의 국토도시정책 과제
 - 01. 국토계획법 전면개정을 생각한다
- 2021. 10. 해외 도시개발
 - 07.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 04. 주택정책과 도시계획
 - 01. 다시, 도시재생을 생각한다
- 2020. 10. 광역도시계획, 회고와 전망
 - 07. 감염병 시대의 도시계획
 - 04. 스마트 시티와 도시계획
 - 01. 도시, 기본계획을 말하다
- 2019. 08. 3기 신도시에 바란다
 - 05. 도시재생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 2018. 08.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 2017. 12. 스마트시티와 도시계획
 - 08. 도시재생뉴딜정책과 도시계획
- 2016. 11. 쇠퇴상권의 재활성화
 - 08. 부산개항 140년, 워터프론트 조명
 - 04. 융복합화와 도시계획
- 2015. 12. 국공유지 활용과 도시경쟁력
 - 10. 지방중소도시의 현안과 발전방향
 - 06. 거버넌스를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 03. 근대 도시건축 문화 유산 특집기획
- 2014. 11. 국토도시분야 해외진출전략
 - 07. 통일에 대비한 국토·도시계획
 - 03. 창간호



9 77271 95030 0
ISSN 2713-6039